

2017년 제 2차
식품안전정책위원회
(대 면 회 의)

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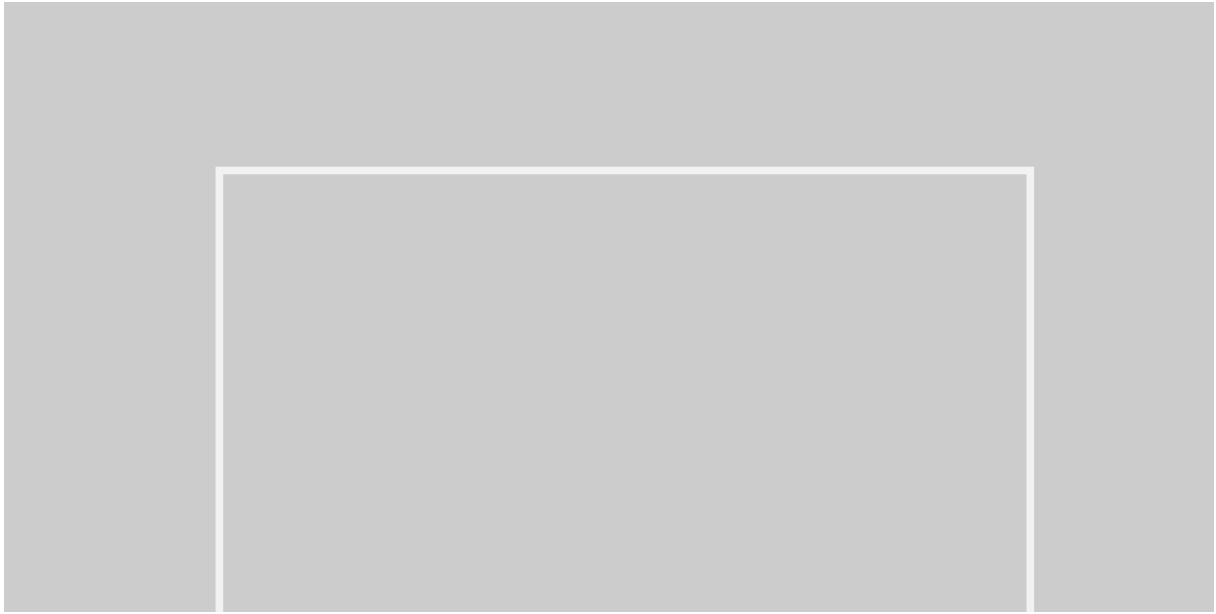
2017. 12. 27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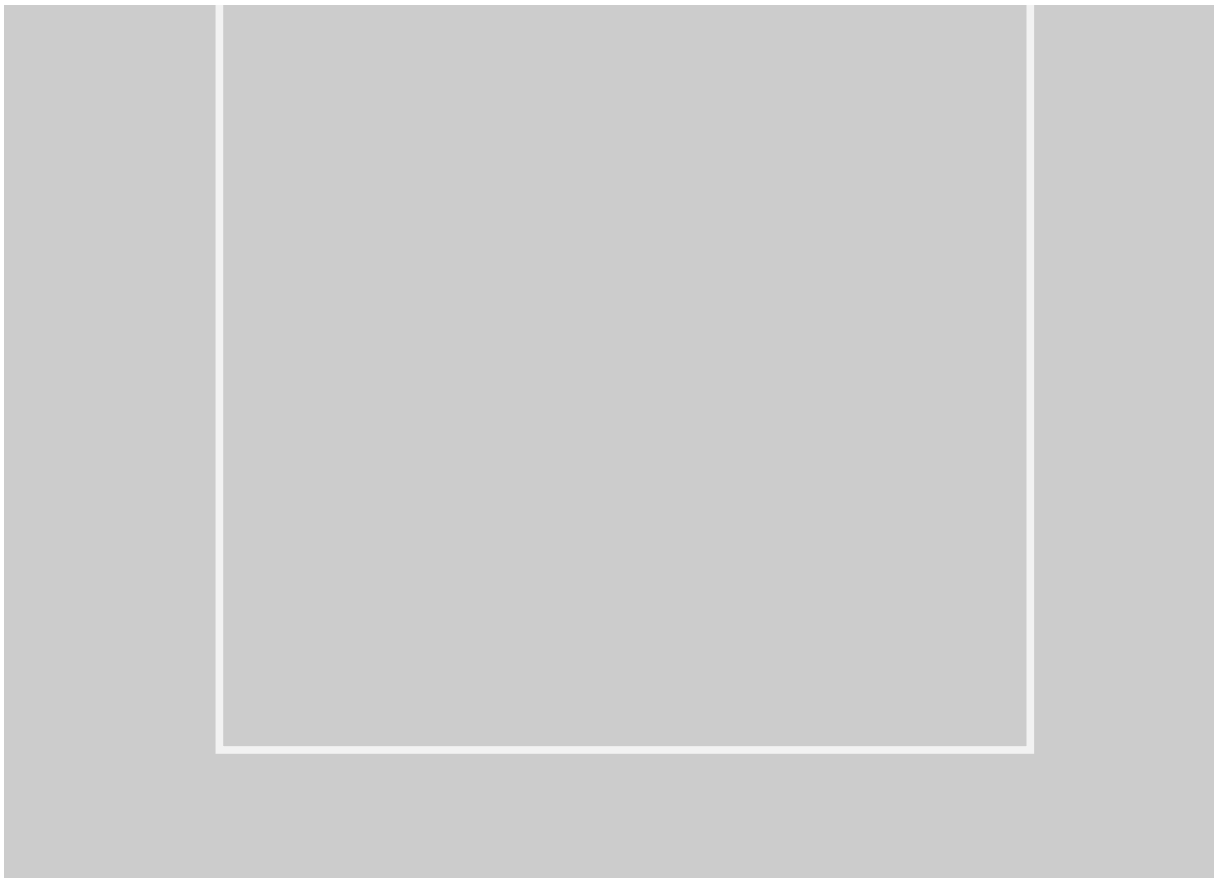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[요약]	i
I. 개요	1
II. 현황 및 문제점	3
III. 추진방향 및 과제	6
IV. 분야별 개선방안	7
1. 축산(가금) 산업 선진화	7
2. 인증제도 개선	24
3.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	33
4.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	62
V. 향후 추진계획	71



요약

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- **지난 8월 살충제 계란사태**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에 대한 불신*으로 이어졌으며, 이는 **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**
 - * 계란소비가 평시 대비 46% 감소(8.30 기준)하고, 829만개의 계란이 폐기(9.15 기준)
 - 또한 상당수 문제 계란이 **친환경·HACCP 농가에서도 확인**됨에 따라,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확산
 - **살충제 계란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엇박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,**
 - **지자체의 전문성과 검사 인력·시설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은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장애요소로 작용**
 - **과거 불량만두('04), 멜라민 분유('08), 가짜 백수오('15) 등 식품안전 사고시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으나 유사 사건은 반복하여 발생**
 - 이는 식품 이슈를 둘러싼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문제제품 위주의 단편적인 사후 처방에 그친데서 비롯
 - 정부는 보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**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(팀장: 국조실장, 9.6),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책 마련**
 - **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자문위(4개분야, 총 50명)를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**하였으며,
 - **현장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양계농가와 양식장 등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지자체의 관리실태도 파악**
- ※ 관계부처 회의(6회), 민관합동 현장방문(3회), 전문가 자문(11회), 실무회의(31회)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음

II. 현황 및 문제점

① 축산(가금) 산업 분야

- 밀식·감금사육은 농가의 살충제 불법사용 유발 요인으로 지적
 -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인해 진드기 발생 억제가 어렵고, 농가의 방제기술 및 전문성도 부족
- 계란의 살충제 검사체계 미흡 및 위반농가 처벌 미약
 - 산란계 농장 중 8%만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이며, 공무원의 농장 강제 출입·조사 권한 및 위반농가 영업제한 규정 미흡
- 국내 생산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증가
 - 소비자는 산란일자·사육환경 등 계란의 생산정보 제공 확대 요구, 살모넬라균 오염 및 깨진 계란 유통 등 위생 문제도 지속 제기

② 인증제도 분야

- 친환경 인증농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증제도 전반의 불신 초래
 - 소비자는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, 다수 인증농장에서 살충제 검출
- 공무원·인증기관·농가 간의 이해관계로 부실인증 의혹 지속 거론
 -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, 동일 인증기관과 농가 간 연속 인증으로 인증 남발 및 관리 부실 우려
- 법령 위반 농·어가와 인증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부족
 - 농약 사용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퇴출근거 부재 및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등 사후관리 수단 미흡

③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분야

- 농수산물 생산·출하단계의 **위해요소 관리 미흡**
 - 농약 등에 대한 **판매기록의무가 없어** 추적관리 곤란하고, 하수 처리시설 부족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 등이 수산물 생산해역에 유입
- **유통·소비 단계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**
 - 해외직구, 인터넷 판매식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, 식품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부재
- 고령화 등 **사회변화**를 고려한 국민 **식생활·영양관리 필요**
 - 잘못된 식습관으로 **비만율이 증가**하고, 어린이집·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**급식관리 미흡**

④ 관리체계 분야

- **현장과 정책의 괴리**로 이행가능성 저하
 - 부처-지자체간 이해가 부족함에도 **협의채널이 미흡**,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**현장중심 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**
- **부처간 협업 부족**으로 단일화된 정부 대응 미흡
 - 동일 사안에 대한 **문제접근과 대응방식이 상이함**에도 부처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의 **일관된 대책 마련과 발표 어려움**
- **대국민 소통**과 체계적 대응 미흡
 -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**공급자 중심 대책 결정과 발표**, 복잡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신속한 초기대처에 장애

III. 주요 추진방향 및 과제

목 표	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전 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축수산물·식품 생산·유통체계 개선 ◆ 친환경·HACCP 등 인증제도 신뢰회복 ◆ 식품안전 수준제고 및 식생활 영양관리 강화 ◆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·상시관리
------------	--

《 추진과제 : 4대분야 20대과제 》

1. 축산(가금)산업 선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②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 ③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④ 계란·닭 유통체계 개선 ⑤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
2. 인증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⑥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⑦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⑧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3.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	
 생산·출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 ⑩ 농약 등 관리 및 지도·점검 강화 ⑪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
 유통·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⑫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⑬ 어린이기호·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⑭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
 영양·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⑮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 ⑯ 취약계층 식생활·영양 안전망 확충 ⑰ 국민 식생활·영양관리 지원
4. 관리체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⑱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⑲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⑳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IV. 분야별 개선방안

① 축산(가금) 산업 선진화

①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

- 국내 가축 사육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**동물복지형 사육기준* 마련·적용**(‘18, 신규농가부터)
 - *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(0.05 → 0.075㎡/마리), 조명 10 lux 유지, 암모니아 농도 20ppm 이하 등
-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**조기 전환**을 위해 **기존 가금농장에 용자로** 지원할 예정이던 **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보조(30%)로 지원**(‘18)
 - * (‘18 당초) 용자 80% → (‘18 개선) 보조 30%, 용자 50%
- 인증 초기 농가의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**동물복지 인증 후 3년 간 직불금* 지급**(‘19)
 - * 산란계 지급(안) : (평사기준 단가) 3원/개, (한도) 3천만원

② 축산농가가 활용가능한 닭 진드기 방제 여건 조성

- 전문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**공동방제 시범사업*** 추진(‘18), **‘가축 방역위생관리업’을 신설**(‘19)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방제 활성화
 - * 5만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(40호) 대상으로 우선 실시
- 농가의 닭 진드기 방제 역량 제고를 위해 **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**(‘17.12) 및 권역별 **교육횟수 확대**(연 1회 → 2회)
- 현장에서 **사용 가능하도록 EU 등 해외에서 허가된 약제를 신속 분석·평가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**(‘18)
-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**약제 개발에 주력했던 기존 연구 지원을 사육환경 개선 분야까지 확대***(‘18 : 12.8억원)
 - * 해외사례 : 축사에 최적화된 화학적(살충제 사용), 물리적(석회 등 탈습제 사용, 고온살균 점등), 생물학적(백신, 천적) 방제법 개발·병용

③ 생산·유통단계 살충제 검사 확대 및 안전기준 위반농가 처벌 강화

- 검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**산란계 농장 전수검사**(1년 주기) 추진*, 전통시장 등 **취약지역 검사 확대**(’17 : 449 → ’18 : 2,200건)
 - * ’18~’19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(친환경 인증 검사)과 지자체가 전수검사 공동 추진, 검사인력·장비 확충을 통해 ’20년부터는 지자체가 전담
- 축산물 안전관리 및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·강력한 대응을 위해 **현장 위생검사공무원의 권한 강화***
 - * 현장공무원에게 산란계 농장 출입·조사 권한 부여(’17.10.24), 위해사고 발생 시 농장에 대한 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및 정보공개 권한 등 명시(’18)
-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**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마련**(’19)

④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

- 난각에 **사육환경*** (’18) 및 **산란일자**** (’19) 표시를 의무화하고, 4가지 생산자명 표시방법을 농장별 1개의 고유번호로 통일
 - * 방사 : 1, 평사 : 2, 개선 케이지(0.075㎡/수) : 3, 기존 케이지(0.05㎡/수) : 4
 - **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시행
- 가정용 계란은 선별·세척 설비를 갖춘 **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**를 통해서만 **유통*** (’19)
 - * 계란유통센터 신·증축 지원 병행(’18 : 신축 2개소, 증축 2개소)
-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수집판매업자에게 **자가품질검사**(연 2회) 의무 부여(’18)
- 쇠고기·돼지고기*와 같이 **계란·닭·오리도 이력추적제 도입**(’19)
 - * 이력추적제 대상 : 국산 소(’08) → 수입 쇠고기(’10) → 국산 돼지(’14) → 수입 돼지고기(’18) → (’19) 국산 계란·닭·오리

② 인증제도 개선

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전관리기준 대폭 강화

- 친환경 인증기준에 GAP·HACCP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충* 하여 안전한 인증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평가 강화('18)

* (현행)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·항생제 중점 관리 → (개선) 현행 + 안전관리 기준(GAP·HACCP) 보강 + 유해물질관리(동물용의약외품 등 확대) 강화

-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를 국제 인증체계에 부합되도록 '유기'로 단일화하고, '무항생제'*는 친환경 인증제에서 제외('20)

*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

** '무항생제' 계란의 경우 신규 인증 농가는 사육밀도 조건(0.05 → 0.075㎡/마리) 충족 시만 허용

-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에 대해 '19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(소규모는 자율적용)

*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제외한 기타 축종은 축종별 특성, 경제성 평가 등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('20)

** 산란계 HACCP 의무적용(안, 두수 / 유통물량) : ('19) 20만수 이상 / 34% → ('20) 10만수 / 54% → ('21) 5만수 / 78% → ('22) 3만수 / 88%

-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(살충제 등) 및 농약(제초제 등) 추가('17.10)

② 부실인증 사전 차단,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증기관 역량 강화

-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을 위해 인증심사원 취업자격에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* ('18)

* (현행) 인증경력 5년 이상인 자, 자격증 소지자 → (개선) 자격증 소지자

** 또한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(2년간) 권고·적용

- 친환경 부실인증 예방을 위해 **개별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**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('18)
-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, **친환경 인증 기관 역량평가**를 실시하여 **'미흡' 기관은 집중관리*** 및 3회 연속 '미흡' 시 **'지정취소'**('18)
 - * 역량평가 '미흡'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 (농관원)이 집중 지도·점검

③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 질적 성장 견인

- **친환경 인증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 농가는 즉시 '인증취소'**('18) 하고, **과징금 부과 등 제재*** 강화
 - *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**5배**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
 - ** 정부의 친환경 관련 **정책자금**(자재 지원 등) 지원 대상에서도 **참여 제한**(3년간)
- **생산·유통 안전성 조사를 2배(연 2회 27천건)로 확대**('18), 친환경 단체인증 시 대표(생산관리자)에게만 실시하던 **의무교육을 인증 농가 전체***로 확대하고,
 - * (현행)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 및 인증기관별 자체교육(연 1회 이상) → (개선) 전체 인증농가 대상 **집합교육**(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포함)
- HACCP 축산농장에 실시했던 정기조사(연 1회) 외에 **연중 불시 조사·평가 실시***, **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해 즉시 '인증취소'**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('18)
 - * 축종·지역 등 여건 감안, 전체 대상 농장의 5% 수준
- HACCP 양식장에 대한 **유해물질 위반 즉시 '등록취소'** 및 안전성 조사 연 2회로 **확대**, 생산책임자 **의무교육*** 등 추진('18)
 - *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합교육(신규+보수) 실시, 미이수시 인증표시 제한

③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

① (생산·출하) 유해물질 관리 강화 및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

-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(0.01 ppm)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(PLS)를 도입('19)하여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
- 농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에 대한 기록·보존 의무를 제조·수입·판매업자에게 부과
 - * (현행) 일부 농약(고독성 등 9종) 판매기록 관리 의무
→ (개선) 모든 농약(가정 원예용 제외) 판매기록 관리 의무
- (수산물)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('19),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추가 확충
 - * (현재)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 하수처리시설 운영
→ ('22년까지) 36개 하수처리시설 추가
- (양식장)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* 전환
 - *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, 배합사료 사용,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
- (사각지대) 농·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, 위·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('18),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*를 확충(~'20)하여 유통전 신속검사를 실시
 - * 전국 공영도매시장(32개) 중 현장검사소 설치되지 않은 16개소 추가 설치

② (유통·소비) 소비자보호·권리 강화

-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학부모 안심을 위해 과자, 캔디류, 초콜릿류,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'20년까지 HACCP 적용 의무화 완료
 - * 업체 매출액 및 종업원수 등 규모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(~'20)

-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**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제품은** 통관 단계에서 신속하게 **신고를 보류하는 '무검사 역류제도'**를 도입('18)
- 식품 섭취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**대표 당사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** 도입('18)
 - * 현행 「증권관련집단소송법」의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 추진
-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**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 위주로**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**국민들에게 공개**

③ (영양·위생) 국민 식생활·영양관리 강화

- 일부 초등학교 **돌봄교실** 대상으로 실시했던 **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***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**확대****하여,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('18)
 - *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, 미각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, 국내산 과일간식 제공
 - ** (현행) 2,357명 → (변경) 약 24만명
- **소규모 어린이집, 노인 요양원 등 사회취약계층이 위생·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'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'**를 확대·개편하는 등 **공공급식관리지원체계 마련**
 - * 공공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근거법률 제정('17.12 국회제출)
- **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***을 개선하여 임산부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**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혜자 확대**
 - * 저소득층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8만7천여명, 대기자는 1만명('16)
- 지역내 안전한 친환경·GAP 인증 식재료를 급식·외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**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으로 확산('18)** 하고, **국가적인 푸드플랜을 마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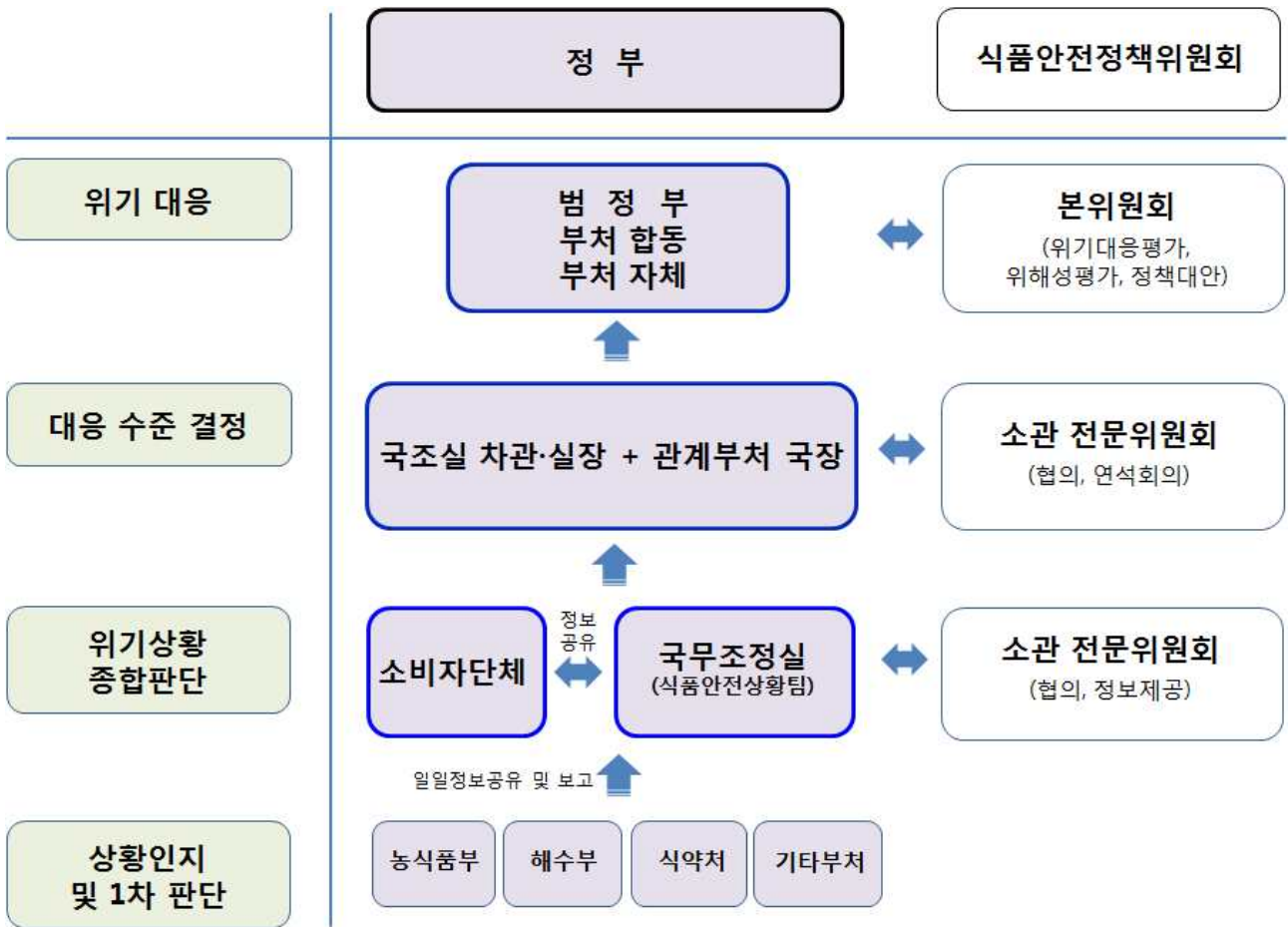
4 관리체계 정비

①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

-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·파악을 위해 **검사정보를 실시간 공유** 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**‘식품안전 정보시스템’을 개편**
 - * 생산단계 정보 추가(14종→24종) 및 부적합 제품 통합관리 기능 생성
- 현장에 적용되는 **축산물 검사기준 및 항목 설정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**하도록 **관계법령 개정**
 - * 살충제 계란사건시 현장을 고려치 않은 검사항목 확대(27→33종)로 현장 적용이 어려움,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준 설정
- **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신속한 추적조사와 실태파악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공동조사***를 실시토록 **관계법령 개정**
 - * 현재 축산물은 생산/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 개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중요 사안의 경우 농식품부·식약처가 공동조사 실시

②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-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**위기판단 기준 명료화***, 분산된 **의사결정구조 일원화** 등을 포함한 **표준매뉴얼을 수립**하고, **부처 개별 매뉴얼도 정비**
 - * (현행) 관심-주의-경계-심각 ⇒ (변경) 상황관리-**위기대응**-사후관리
-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**총리실 상황팀과 부처별 전담팀을 구성**, **일일정보 공유** 등을 통한 **정부 단일대응체계 운영**
 - * 식품안전상황팀(국조실)에서 위기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판단, 위기 상황 인지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대응수준 결정



③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-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정책 조정·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* 및 기능을 개편하고, 위기상황 판단 및 위기대응 지원 기능 강화

* 현행) 기획·제도, 위해정보·긴급대응, 화학물질, 미생물, 신식품 →
재편)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가공·수입식품, 소비·영양안전

- 식품안전 정책 수립 및 발표과정에 소비자와 소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*를 운영, 정부(공급자)가 아닌 국민(수요자) 중심 소통방식으로 전환

* 농·축·수·가공식품별 관련분야 전문가 및 커뮤니케이션,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소통협의회 구성

V. 향후 추진계획

□ 「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」 신속 시행(관련부처)

- 고시·행정규칙 등 개별부처에서 실시 가능한 행정조치는 즉시 시행
- 규제심사 필요 과제는 최우선순위로 심사(국조실)
- 예산·인력 등 필요 대책은 '19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(기재부·행안부)
-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, 소관부처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

□ 「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」 분기별 점검·평가(국조실)

-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신설될 식품안전 상황팀(국조실)에서 과제별 조치계획에 따른 소관부처 이행상황 점검
- '18년 상반기 발표할 '18~'20년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식품안전 정책위 상정)에 종합대책 내용 반영

① 축산(가금) 산업 선진화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	• 사육밀도가 높고, 사육 밀도 외 사육기준 부재	•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 (공기오염도, 조명 등)	축산법 시행령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생산성 향상 중심의 시설개선 용자 지원	• 동물복지형 농장에 시설 개선 보조 지원	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개정 (농식품부, '17.12)
	• 경영비 등 부담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한계	•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도입	인증농가 직불금 지원 (농식품부, '19)
2. 현장 활용가능한 방제 여건 조성	• 농가의 전문성 부족으로 방제효과가 낮음	• 해충 전문방제업 신설	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0)
		• 진드기 방제 매뉴얼 마련	매뉴얼 개발·보급 (농식품부, '17.12)
	• 약제개발 중심 연구	•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방제기술 연구 지원	R&D 사업 추진 (농식품부, '18)
3.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	• 산란계 농장 표본검사	• 농장단위 전수검사 추진	지자체 인력장비 연차적 확충 (농식품부·식약처, '19~)
	• 유통사각지대 관리 미흡	• 전통시장 등 검사 확대 • 이동식 도축장 제도 도입	유통 식용란 검사 계획 수립 (식약처, '18)
	• 공무원 농장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 제한	• 농장 출입·조사, 출하중지, 정보공개 등 권한 부여	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8.10)
	•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 과태료·벌금 처분	•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	축산법 및 약사법 등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9.6)
	• 사료내 관리대상 농약 중 일부 살충 성분 누락	• 살충제 성분 추가(5개)	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 (농식품부, '18.6)
	• 방역관리 중심의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	• 위생·안전 교육과정 신설	축산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6)
4. 계란·닭 유통체계 개선	• 산란일자 자율 표시 사육환경 미표시	• 난각 산란일자·사육환경 의무 표시	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(식약처, '18.2)
	• 소·돼지만 이력추적제 실시	• 계란·닭·오리까지 확대	축산물이력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계란 선별세척포장 유통 자율실시(33%)	• 계란 선별포장업(GP)를 통한 유통 단계적 의무화	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8.4)
5.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	• 서류 확인 중심 농장점검	•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	축산법 시행령 개정 (농식품부, '18.6)
	• 사육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방역점검 누락	•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	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AI 빈번 발생	• 농장 이전, 인수·합병 등 가금밀집사육지역 재편	시범사업 및 재편계획 수립 (농식품부, '18)
	• 동절기에 AI 발생 집중	•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 운영	법정부 비상체제 유지 (농식품부, '18)

2 인증제도 개선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위생·안전 기준이 미흡한 환경보전 중심의 인증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GAP·HACCP 등의 안전·위생 기준 보강 	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축산물은 '유기'·'무항생제' 구분 * 국제인증 : '유기'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'유기'로 단일화 *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 	친환경농어업법 등 개정 (농식품부, '19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HACCP) 축산농장 자율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규모 산란계 농장부터 HACCP 인증 의무적용 	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HACCP) 축산분야 항생제 중심의 평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항목에 살충제·농약 추가 	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개정 기 완료('17.10)
2.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공무원경력만으로 심사원 취업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	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동일 인증기관 연속 신청 허용 * 횟수 제한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 	친환경농어업법 개정 (농식품부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 여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질적 성장을 위해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연속 '미흡' 부실기관 퇴출 	
3.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농가와 상습 위반자 제재수단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,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징수 	친환경농어업법 개정 (농식품부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친환경) 인증단체 생산관리자만 의무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인증농가 대상 의무교육 	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축산농장 HACCP) 사전공지 후 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제도 도입 	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개정(식약처, '18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양식장HACCP) 유해물질 위반시 제재조치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	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(해수부, '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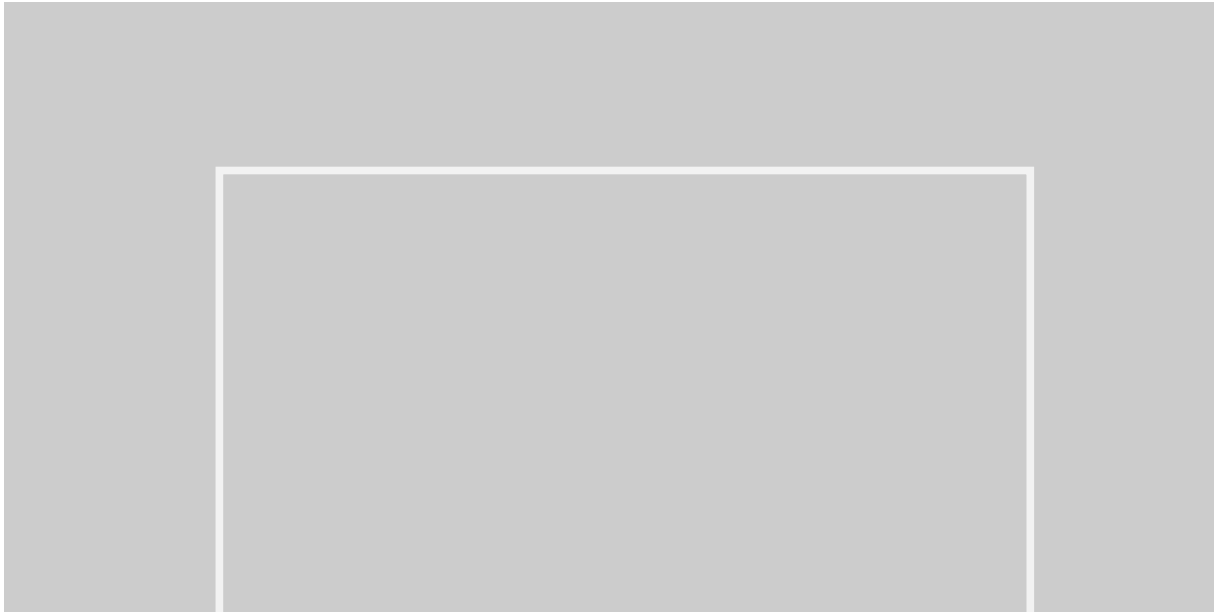
3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유해물질 기준강화 등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	•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부재	•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 도입(일률기준 적용)	식품등 기준 및 규격 고사개정 (식약처, '18.2)
	• 소면적 재배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	• 현장에 필요한 농약 신속등록 및 기준설정	연구사업 예산 확보 (농진청, 127억원)
	• 패류생산 일반 해역 오염원 관리 부족	•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(36개소)	'19년 예산 확보 (해수부·환경부, '18)
	• 양식수산물에 소독약, 항생제 등 사용	• 양식수 정화 등을 통한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	양식수 정화 시스템 보급 등 (해수부, '18~'22)
	•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부재	•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 구축·운영	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(식약처, '18)
2. 농약 등 관리 및 지도·점검 강화	• 농약 등 판매현황 관리 미흡	• 모든 농약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	농약관리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양식업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행정처분 경미	•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	수산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(해수부, '18)
	•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족	• 지자체 인력·장비 확충(6개)을 통해 검사율 확대	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구축(해수부, '18)
3.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	• 위공판장, 도매시장 시설 노후 및 위생관리 미흡	• 시설 현대화, 위생관리기준 마련·적용	계획 수립 및 기준 마련 (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, '18)
	•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(16개)	•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(32개)	'19~'20년 설치 예산 확보 (식약처)
4.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	• 이력추적 의무화 대상 식품의 비율 낮음	• 당노환자, 임산부 등 섭취 식품을 대상에 추가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(식약처, '18)
	•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불가	• 종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	시범사업('18) 본격운영(식약처, '19)
5. 어린이기호·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	•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	• 캔디류, 초콜릿 등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	HACCP 의무적용 완료 (식약처, '20.12)
	• 통관단계 위해식품 차단제도 근거 부재	• 위해수입식품 보류조치 제도(무검사역류제) 도입	수입식품특별법 개정 (식약처, '18)
	•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지속 발생	• 다빈도 이상사례 주의표시 의무화	건강기능식품법 개정 (식약처, '18)
6.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	• 해외직구식품 증가 및 불만사례 지속 발생	• 소비자 요구 제품위주로 검사체계 전환	검사항목 선정 및 결과 제공 (식약처, '17.12)
	•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미비	•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	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(법무부, '18)
7. 급식 등 위생 관리 개선	•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 관리 문제 지속 발생	• 식재료 검수시스템 마련	계획수립('18), 도입추진(교육부, '19)
	•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	•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강화	영업자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(식약처, '17.10~)
	•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속 발생	•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	유전자 분석장비 도입 (식약처, '18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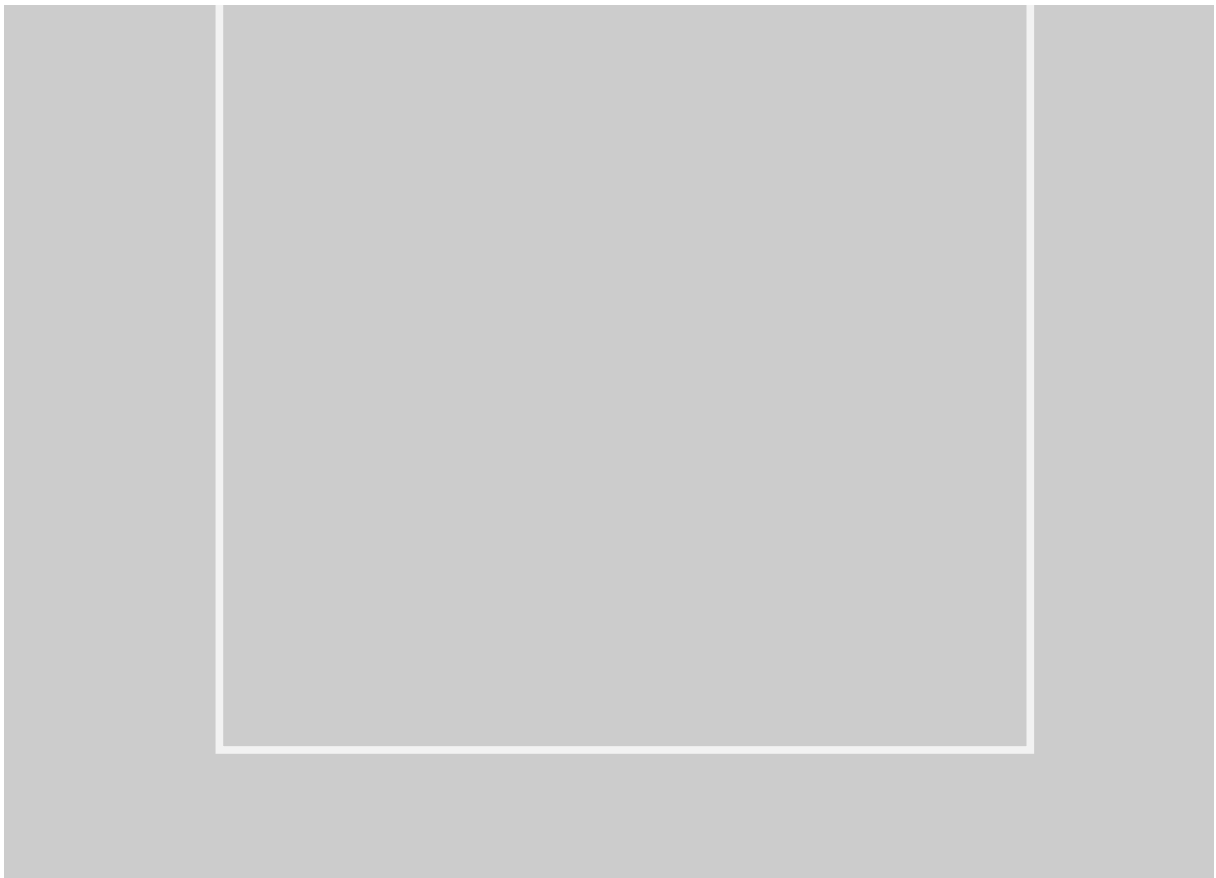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8. 취약계층 식생활·영양 안전망 확충	• 취약계층 급식안전·영양관리 지원 부족	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편을 통한 지원 확대	공공급식의 위생·영양지원 법률 제정(식약처 '17.12.발의)
	•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 영양지원 미흡	•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접근성 제고	프로그램 전국 확대·보급 (복지부, '18)
	• 가정간편식 중 일부 영양표시(김밥 햄버거 등)	•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확대 - 모든 즉석섭취조리식품	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법령 개정(식약처, '18.1)
	•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	•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기반(바우처) 마련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(농식품부, '18)
9. 국민 식생활·영양 관리 지원	•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제공 시범사업	•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확대	프로그램 과일간식 공급 체계 마련 (농식품부·복지부, '18)
	• 나트륨·당류 저감 실천 노력 부족	• 나트륨·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	나트륨·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운영(식약처, '18)
	• 일부 지자체에서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운영	•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 확산	지역 및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(농식품부, '18)

4 관리체계 정비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	• 부처간-지자체간 상호 이해 및 협업노력 부족	• 협의·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	협업채널구축운영 계획 수립 (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 '18.3)
	•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 및 개별적 현장점검	• 생산정보 공유 확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	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(국조실 '18.4)
	• 지자체 축산물 안전 검사 인력·장비 부족	• 검사시설 확대 및 부처 전문인력 지원	지자체 역량강화 지원계획 마련 (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 '18.3)
2.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	• 매뉴얼이 복잡 다기, 위기시 적기대응 곤란	• 위기시 적용 가능한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	표준매뉴얼 마련 (국조실, '18.6)
	• 위기시 소관부처별 개별 대응	•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	총리실 상황팀, 부처별 전담팀 설치 (국조실, '18.1)
3. 식품안전 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	•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기본·시행계획 심의 위주로 운영	• 정책 조정·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	식안위 역할 강화 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 (국조실, '18.1)
	• 정부 중심의 일방향 소통	• 민관 소통 거버넌스 운영	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(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 '18.6)



본 문



1. 배 경

□ 지난 8月 살충제 계란사태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에 대한 불신*으로 이어졌으며, 이는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

* 계란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: 사고 前 40.8 → 後 74.9%로 증가 (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, 8.30 기준)

○ 정부는 전수검사 및 수거폐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,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, 소비량 급감과 가격 하락*으로 이어짐

* 살충제 계란사태 발생(8.14) 전후로 소비량은 46.0% 감소(8.30 기준)하고, 산지가격은 32.2% 하락(9.12 기준) [한국농촌경제연구원]

○ 여기에 더하여 상당수 문제 계란이 친환경 농가에서도 확인됨에 따라,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

□ 과거 불량만두('04), 멜라민 분유('08), 가짜 백수오('15) 등 식품안전 사고시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으나 유사 사건은 반복하여 발생

○ 이는 식품 이슈를 둘러싼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문제제품 위주의 단편적인 사후 처방에 그친데서 비롯

○ 최근에는 '용가리 과자', '유럽산 햄 E형 간염'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문제가 발생, 향후 어떤 품목에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움



용가리과자(8.1)



살충제계란(8.14)



햄 E형간염(9월)



기타분야

- 살충제 계란 등 식품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엇박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
 - 지자체의 전문성과 검사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- 국민은 생산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원하고 있으며,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있어서도 국가 역할 확대 필요성 제기
 - 따라서 **식품안전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**하여 사전적·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

2. 추진경과

-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**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TF**를 구성 ('17.9.6~)하여 **관계차관* 회의(6차례)** 실시
 - * 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·국방부·행안부·교육부·복지부
 - TF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무 TF*를 구성, 관계부처 **실무회의(31차례)** 등을 통해 과제별 쟁점 조정 및 개선방안 도출
 - * 국조실 3, 농식품부 3, 식약처 3, 해수부 1, 행안부 1, 복지부 1
-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**각계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(4개 분야, 총 50명)를 구성**
 - **민관 합동 현장방문(3차례)*** 및 **전문가 자문(11차례)**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, 개선대책 적용시 현장적용 방안, 다양한 이해집단 **의견 수렴**
 - * ① 가금농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(9.26) ② 양식장 및 위·공판장(10.27)
 - ③ 친환경인증농가(10.27)

II

현황 및 문제점

① 축산(가금) 분야

- 금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 사육환경, 방제여건, 유해물질 검사·관리, 유통체계 등 생산·유통 소단계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
 - 밀집·감금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등이 축사 내 진드기 및 질병 발생을 가중시키고, 효과적인 방제에도 어려움
 - 농가의 진드기 방제기술 부족, 안전의식 미흡 및 허용된 약제 미비 등이 미허가 살충제 살포를 유발함
 - 산란계 농장 중 일부(8%)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 실시 중
 - 현장 집행공무원에게 농장 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·강력한 현장 대응이 어려움
 -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는 과태료·벌금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, 축산업 허가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미비한 실정
 - 계란의 33%만이 선별·세척·포장 설비를 갖춘 시설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, 오염물이 묻은 계란 유통 등 안전·위생문제도 지속 제기
 - 또한, 계란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 등 생산정보 제공 확대를 강력히 요구

② 인증제도 분야

- 안심 먹거리로 인식되던 친환경(무항생제) 및 HACCP 인증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*되면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 초래

* 살충제 검출농가 중 HACCP농가 52%(29개), 친환경농가 56%(31개)

- 소비자는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, 다수 인증농장에서 살충제 검출
 - 축산물 HACCP은 살충제·농약 관리기준이 없고, 친환경 축산물 안전성 검사기준은 식품 위생기준과 일부 상이하여 관리 사각지대 존재
-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, 동일 인증기관과 농가 간 연속 인증으로 온정주의에 따른 인증 남발 및 관리 부실 우려
- 농약 사용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퇴출근거 부재 및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부족

③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분야

-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·가공·유통 및 소비 **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**
 - 농·수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지·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이 미흡하고,
 - 농약 등에 대한 판매기록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려우며, 위·공판장 및 도매시장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도 존재
 - 유통·소비단계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·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, 소비자 식품피해 구제제도도 미비
-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**국민 식생활·영양관리 미흡**
 -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국민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, 학생들의 경우 과도한 열량섭취로 인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
 - 소규모 어린이집·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위생·영양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

④ 관리체계 분야

□ 식품사고 발생시 정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**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**

-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방식이 다르고, 이에 따른 개별부처 중심의 대처는 정부의 일관된 대응책 수립에 장애
-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결조건임에도, 이를 위한 협의·소통채널 미비
-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도 국민(수요자)이 아닌 정부(공급자)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함

☞ 전국민이 섭취하는 계란·닭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육환경, 농약·살충제 관리, 유통체계, 처벌기준,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수립

☞ 농·수산물, 어린이기호·수입식품, 취약계층 영양안전망 확보 등 식품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

☞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기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식품관리체계 및 쌍방향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

Ⅲ

추진방향 및 과제

목 표

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

전 략

- ◆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축수산물·식품 생산·유통체계 개선
- ◆ 친환경·HACCP 등 인증제도 신뢰회복
- ◆ 식품안전 수준제고 및 식생활 영양관리 강화
- ◆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·상시관리

《 추진과제 : 4대분야 20대과제 》

1. 축산(가금)산업 선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②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 ③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④ 계란·닭 유통체계 개선 ⑤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
2. 인증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⑥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⑦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⑧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3.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	
생산·출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 ⑩ 농약 등 관리 및 지도·점검 강화 ⑪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
유통·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⑫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⑬ 어린이기호·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⑭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
영양·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⑮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 ⑯ 취약계층 식생활·영양 안전망 확충 ⑰ 국민 식생활·영양관리 지원
4. 관리체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⑱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⑲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⑳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- ◇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
- ◇ 현장 맞춤형 방제기술 확대와 위반자 처벌 강화 병행
- ◇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한 생산정보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	• 사육밀도가 높고 사육 밀도 외 사육기준 부재	•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 (공기오염도, 조명 등)	축산법 시행령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생산성 향상 중심의 시설개선 용자 지원	• 동물복지형 농장에 시설 개선 보조 지원	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개정 (농식품부, '17.12)
	• 경영비 등 부담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한계	•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도입	인증농가 직불금 지원 (농식품부, '19)
2. 현장 활용가능한 방제 여건 조성	• 농가의 전문성 부족으로 방제효과가 낮음	• 해충 전문방제업 신설	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0)
	• 약제개발 중심 연구	• 진드기 방제 매뉴얼 마련 •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방제기술 연구 지원	매뉴얼 개발·보급 (농식품부, '17.12) R&D 사업 추진 (농식품부, '18)
3.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	• 산란계 농장 표본검사	• 농장단위 전수검사 추진	지자체 인력장비 연차적 확충 (농식품부·식약처, '19~)
	• 유통사각지대 관리 미흡	• 전통시장 등 검사 확대 • 이동식 도축장 제도 도입	유통 식용란 검사 계획 수립 (식약처, '18)
	• 공무원 농장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 제한	• 농장 출입·조사, 출하중지, 정보공개 등 권한 부여	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8.10)
	•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 과태료·벌금 처분	•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	축산법 및 약사법 등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9.6)
	• 사료내 관리대상 농약 중 일부 살충 성분 누락	• 살충제 성분 추가(5개)	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 (농식품부, '18.6)
	• 방역관리 중심의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	• 위생·안전 교육과정 신설	축산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6)
4. 계란·닭 유통체계 개선	• 산란일자 자율 표시 사육환경 미표시	• 난각 산란일자·사육환경 의무 표시	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(식약처, '18.2)
	• 소·돼지만 이력추적제 실시	• 계란·닭·오리까지 확대	축산물이력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계란 선별세척포장 유통 자율실시(33%)	• 계란 선별포장업(GP)를 통한 유통 단계적 의무화	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8.4)
5.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	• 서류 확인 중심 농장점검	•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	축산법 시행령 개정 (농식품부, '18.6)
	• 사육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방역점검 누락	•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	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(농식품부, '18.12)
	•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AI 빈번 발생	• 농장 이전, 인수·합병 등 가금밀집사육지역 재편	시범사업 및 재편계획 수립 (농식품부, '18)
	• 동절기에 AI 발생 집중	•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 운영	범정부 비상체제 유지 (농식품부, '18)

1.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

1] 동물복지형으로 사육기준 개선

현 행	밀식사육이 살충제 과다 사용 유발 원인으로 지적	→	개 선	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·적용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밀식·감금사육은 가축질병에 취약하고 살충제 과다 사용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
 - * 사육면적 증가 시, 가축의 스트레스·염증 감소 및 면역력 증가('08, 농진청)
- EU는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, 국내는 미도입
- (개선) 국내 가축 사육수준이 동물복지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**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**하여 축산업 허가요건으로 적용
 - * (EU) '03년부터 폐쇄형(Battery) 케이지 신축 금지, '12년부터는 기존시설도 동물복지형 케이지(0.075㎡/마리, 햇대 등 설치)만 사용
- 사육밀도 상향(산란계 : 0.05㎡/마리 → 0.075㎡/마리), 학대 행위 금지, 조명·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

< 예시 : 산란계 동물복지형 사육기준(안) >

구분	현행	EU 기준	동물복지형 사육기준(안)
사육 밀도	0.05㎡/마리	0.075㎡/마리	0.075㎡/마리
시설 관리	기준 없음	①정상 활동가능 밝기 유지 ②충분한 환기 필요	①조명 10lux 수준 유지 ②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
건강 관리	기준 없음	1일 1회 이상 건강 점검·기록	1일 1회 이상 건강 점검·기록 * 부리다듬기 등 인위적인 신체 절단 등 고통 최소화

※ 사육기준(안)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농가실태 조사 등을 거쳐 확정

- 상향된 사육밀도는 신규 진입농가에 우선 적용, 기존 농가에는 '25년까지 적용 유예*

* 유럽은 케이지 내구 연한을 감안하여 10년을 유예했으나, 우리나라는 동물 복지형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7년 간 유예

⇒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('18.12, 농식품부)

*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('18.6)

2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개선 지원

현 행	생산성 향상 중심의 시설개선에 융자 지원	→	개 선	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시설개선 보조(30%) 지원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

- (현황) 동물복지형 전환에 시설투자 부담이 크지만,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동물복지형 사육방식의 조기 확산이 어려움
 - 그간의 생산성 향상 중심의 정책지원을 동물복지 축산 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
 - (개선)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보조(30%)로 지원('18)
 - * ('18 당초) 융자 80%, 자부담 20% → ('18 개선) 보조 30%, 융자 50%, 자부담 20%
 -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반영한 표준설계도 개선·보급('18)
- ⇒ 가금농장 대상 시설개선 보조 지원('18 : 국비 97억원, 농식품부)

3 동물복지 인증 직불제 도입

현 행	농가 경영비 부담 등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한계	→	개 선	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제도 단계적 도입 추진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동물복지 인증을 통한 매출 증가가 농가 경영비 증가(산란계 기준 30%)에 못미쳐 농가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한계*

* '16.12월 기준 전체 축산농가 10만 2천호 중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114호(0.1%)

- 친환경과 달리 동물복지 인증은 소득 보전 차원의 직불금 미지급

- (개선) 인증 초기 농가의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 후 3년 간 직불금* 지급('19)

* 지급단가(안) (산란계 평사 기준) : 3원/개, 한도 : 3천만원

- 국가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* (검역본부, 연 1회) 실시, 위법 확인 시에는 직불금 회수 및 인증 취소

* 농가가 출하량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, 인증·감독 기관(검역본부)이 이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

⇒ 산란계 농가 대상 직불금 지원('19, 농식품부)

* 타 축종은 단계적 확대

2.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

① 축사 위생관리·방제 전문업 신설

현 행	농가 전문성 부족으로 방제효과가 낮고 약제 오·남용	→	개 선	방제업 신설로 전문업체에 의한 축사 위생관리 추진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전문성이 부족한 농가가 직접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방제 효과가 낮고, 약제 오·남용으로 인해 축산물 안전도 위협

* 국내 전문방제 대행업체는 1개소, 축사 청소·소독 대행업체는 10개소로 추정

< 참고 : 해외 닭 진드기 방제업 현황 >

- ◎ (프랑스) '16년 2,400여개 전문방제업체가 농장 소독·방제를 대행하고 있으며,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살충제 판매·유통·사용
- ◎ (호주) 농장 방제 대행업체는 주 정부나 농업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고, 주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살충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이수 필요

- (개선) 전문적 방제와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'가축방역위생 관리업' 신설('19)

- 5만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(40호) 대상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 사업* 추진('18 : 7.5억원)

* 보조 80%(국비 4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20%

⇒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개정('18.10, 농식품부)

② 농가 맞춤형 닭 진드기 방제 매뉴얼 개발·보급 및 교육 확대

현 행	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한 농가 전문성 부족	→	개 선	현장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매뉴얼 개발·보급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농장 여건에 맞는 표준매뉴얼이 없고, 전문성이 부족한 농가가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치는 것이 살충제 불법사용의 주 요인

- 산란계 농가 대상 닭 진드기 관리를 포함한 위생관리 교육을 연 1회(5시간, 집합) 실시* 중이나, 농가 교육 참여율 저조('16 : 23%)

* 교육기관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양계협회

- (개선) 농가의 닭 진드기 방제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 및 권역별 교육횟수 확대(연 1회 → 2회)

⇒ 소 산란계 농장 및 시·군에 닭 진드기 방제 매뉴얼 2,000부 제작·보급('17.12, 농식품부)

3] 최적의 방제기술 개발 및 약제 신속 등록

현 행	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방제 약제 및 기술 부족	→	개 선	최적화된 기술 연구 지원(7.6억원) 및 해외 허가 약제 국내 도입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·연구에도 불구하고, 가격·효과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실용화 기술 개발은 미흡

< 참고 : 닭 진드기 방제기술 개발 연구 동향 >

- ◎ '15~'17년 닭 진드기 방제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개 과제 추진(13.6억원)
- ◎ 살충제 개발(농식품부), 살비제 개발(중기부), 살충 물질 개발(산업부), 축사 내 진드기 모니터링 및 광 조절 기술(농진청) 등 범부처적으로 연구 추진 중

- (개선)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약제 개발에 주력했던 기존 연구 지원을 사육환경 개선 분야까지 확대

* 해외사례 : 축사에 최적화된 화학적(살충제 사용), 물리적(석회 등 탈습제 사용, 고온살균 점등), 생물학적(백신, 천적) 방제법 개발·병용

- 가축에 직접 살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개발, 진드기 발생 조절용 축사 설계법 등 국내 방제기술 개발 지원
- 신규 약제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, 유럽 등 해외 허가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석·평가를 통해 국내 조기 도입('18)

⇒ 방제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('18 : 12.8억원, 농식품부) 및 신규 약제 신속 등록 추진('18, 농식품부·식약처)

3.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

1 계란·산란노계 살충제 검사 강화 및 합리적 안전기준 설정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산란계 농장 표본검사(8%) ◦ 일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미설정 	→	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전수검사 추진(100%) ▷ 허용목록관리제도(PLS) 단계적 도입
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	---

○ (현황) 지자체는 농장단위로 계란·산란노계 잔류물질 표본검사*를 실시하고 있으나, 검사비율이 8%에 불과하여 사각지대 존재

* (계란) 농장에서 시료 채취 후 검사, (산란노계) 도계장에서 시료 채취 후 검사

- 농산물은 PLS* 제도를 도입('19.1월 전면 시행)하여 엄격한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, 축산물까지는 확대되고 있지 못한 상황

* PLS :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이외에는 검출한계 수준(0.01ppm) 적용

○ (개선) 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농장단위 계란·산란노계 전수검사* 추진

* '18~'19년까지는 농관원(친환경 인증 축산물 검사)과 지자체가 전수검사 공동 추진, '20년부터는 검사인력·장비 확충을 통해 지자체가 전수검사 전담

** 민간검사기관 지정·활용도 확대

- 축산물에 대한 농약·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도입으로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출기준 설정·적용

⇒ (검사) 연차적으로 지자체 검사인력·장비 확충* ('18~, 농식품부·식약처)

*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지원 확대('17 : 17억원 → '18 : 64억원)

⇒ (기준) 축산물 PLS 제도 도입 로드맵 수립('18.12, 농식품부·식약처) 및 적용 대상 축산물·성분 단계적 확대('19~, 농식품부·식약처)

* 닭고기와 식용란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로 설정된 살충제 14개 성분부터 기준 마련('18.12)

2 계란·닭 유통사각지대 점검 강화

현 행	→	개 선
전통시장 및 인터넷 판매 계란·닭고기 안전관리 취약		▷ 사각지대 계란·닭 잔류농약 검사 확대 ▷ 이동식 도축장 제도 도입

- (현황)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·닭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*,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닭 불법 도축
 - *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 전통시장 등에서 식별번호 표시 없이 판매
 - (개선) 계란·닭고기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중인 계란·닭고기 검사 확대, 전통시장 등에서 위생적 도축을 위한 간이시설 지원
 - 전통시장·인터넷 판매 계란·닭고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확대
 - * 검사건수 : ('17) 449 → ('18) 2,200건(전통시장 1,000, 인터넷 1,200)
 - '이동식 도축장(차량)' 허가 특례 도입('17.11)으로 도축 여건 개선
- ⇒ '유통단계 식용란 수거·검사 계획' 수립·시행('18, 식약처)

3 축산물 안전관리 현장 집행 공무원의 권한 강화

현 행	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농장단계 강제집행 권한 불명확	→	개 선	농장 출입·조사 및 긴급조치·정보공개 권한 명확화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방역과 달리 공무원에게 안전 검사 목적의 농장 출입·조사 권한 미비, 농가의 시료채취 거부 시 강제적인 검사 추진 곤란*

*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 농가의 협조·동의를 구해야만 출입·조사 가능

- 위해사고 발생 농장에 대한 출하제한 등 긴급조치, 농장 정보 공개 등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·절차 부재*

* 「식품안전기본법」에 일반적인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, 개별법인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부재

○ (개선) 축산물 안전관리 및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·강력한 대응을 위해 현장 위생검사공무원의 권한 강화

-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에게 축산농장(소, 돼지, 닭 등) 출입·조사 권한 부여('18)

* 산란계 농장 출입·조사 권한은 기 부여('17.10)

-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농장 위해사고 발생시 출하중지 등 긴급 조치 권한 신설, 안전기준 위반농가 정보공개 규정 마련('18)

⇒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개정('18.10, 농식품부·식약처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'19.4, 농식품부·식약처)

4 살충제 불법사용 축산농가 처벌 강화

현 행	살충제 사용농가에 대한 처분 미흡(과태료·벌금)	→	개 선	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로 중대 위반사항 처벌 강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살충제 불법사용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·벌금 처분*에 그쳐,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부재

* 「농약관리법」 : 농약 불법사용 시, 최대 100만원 과태료
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: 유해 축산물 판매·유통 시, 최대 5천만원 벌금

- 동물용의약품 불법사용 시에는 「축산법」상 축산업 허가취소가 가능하나, 동물용의약외품과 농약을 불법사용한 경우에는 미적용

* 「약사법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가능

- (개선)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**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**

*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사용기준 미준수 시에도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

⇒ 「축산법」 개정('18.12, 농식품부) 및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('19.6, 농식품부), 「약사법」 개정('18.12, 식약처)

5 사료·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
현 행	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대상에서 일부 살충 성분 누락	→	개 선	유입가능한 살충 성분을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대상에 추가(5개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

- (현황) 계란의 살충제 검사 항목 중 살충 5개 성분*이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대상에 미포함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공백 노출

* 5개 성분 : 플루페녹수론, 에톡사졸, 피리다벤, 클로르페나피르, 테트라코나졸

- 국내 가축의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*, 일부 농가의 항생제 오·남용이 지속되어 축산물 안전성 저하 우려

* 젠타마이신(대장균 항생제) 내성율(%) : (한국) 14.5, (덴마크) 0, (일본) 1.8

- (개선) 축산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 강화* 및 처방 의무대상 항생제 확대**

* 사료에 누락되어 있었던 5개 살충제 성분을 잔류농약 관리대상에 추가

**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품목 확대('17 : 32 → '20 : 40종)

- 사료(농식품부)와 축산물(식약처)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시 부처·기관 간 사전협의 제도화

⇒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(고시)」 개정('18.6, 농식품부),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(고시)」 개정('19.12, 농식품부)

6 생산자 책임성 제고를 위한 위생·안전교육 강화

현 행	축산농가 대상 의무교육이 방역관리 중심으로 실시	→	개 선	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'위생·안전' 과정 신설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안전관리 교육 부재 등 농가의 의식 향상을 위한 수단 부족

-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2년에 1회 의무교육을 이수(6시간) 중이며, 교육내용도 방역관리 중심으로 구성

* 교육기관(총 195개소) : 농협, 생산자단체, 시·도 농업기술센터 등

- (개선)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에 '위생·안전' 과정을 신설하고, 교육횟수도 확대(2년 1회 → 1년 1회)

⇒ 「축산법」 개정('18.6, 농식품부)

4. 계란 · 닭 유통체계 개선

1. 난각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란일자 자율 표시 ○ 사육환경 미표시 	→	개 선	<p>산란일자와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</p>
--------	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우리나라는 산란일자를 난각·포장지에 자율 표시 중, 사육환경은 미표시

-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4가지로 난립하고 있어 통일 필요성 제기

< 참고 : 난각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 표시 해외사례 >

◎ 산란일자 : 전세계적으로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음

* (일본) 채란일자 자율 표시, (EU) 산란일자 자율 표시

◎ 사육환경 : EU는 '08년부터 사육환경 정보를 포장지와 난각에 의무 표시*

* 유기 : 0, 방사 : 1, 축사 내 평사 : 2, 케이지 : 3

○ (개선) 소비자에게 투명한 생산정보 제공을 위해 **난각에 산란일자*와 사육환경** 표시 의무화**

* (산란일 기준) 산란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것을 포함

(시행시기) 고시 개정 후 1년 간 시행 유예 및 6개월 간 계도 후 본격 시행

** 방사 : 1, 평사 : 2, 개선 케이지(0.075㎡/수) : 3, 기존 케이지(0.05㎡/수) : 4

- 4가지 생산자명 표시방법을 농장별 1개의 고유번호로 통일

< 현행 >



⇒

< 개정안 >



⇒ 「축산물의 표시기준(고시)」 개정('18.2, 식약처)

2 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를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

현 행	계란 선별·세척·포장 유통 자율 시행	→	개 선	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를 통한 유통 의무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거나 깨진 계란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등에 2차 감염될 위험에 노출

- 선진국* 대비 선별·세척·포장 설비를 갖춘 시설(GP : 84개소)을 통해 유통 중인 계란 비율이 낮음(33.3% 수준)

* 해외사례 : (독일) GP 유통 의무화(100%), (일본) GP를 통해 80% 유통

○ (개선) 오염물과 깨진 계란이 선별·제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란의 '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*' 의무 유통제 도입**

* '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'을 허가 업종으로 기 신설('17.10.24)

** '19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우선 시행하고, 조리·가공용은 GP 인프라 확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

- 계란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살충제 잔류 검사를 포함한 자가품질검사(연 2회 이상) 의무 부여('18)

⇒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.4, 식약처), 계란의 GP 유통 의무화 시행('19.4) 대비 '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*' 신규 추진 ('18 : 신축 2개소, 증축 2개소, 농식품부)

* '18년 예산 : 국비 18억원, 지원조건(%) : 보조 60(국비 30, 지방비 30), 자부담 40

※ G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(융자 40억원, 이자율 2.5~3%)

3 계란·닭·오리 이력추적제 도입

현 행	가금류 이력추적제 미실시	→	개 선	계란·닭·오리까지 확대 적용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유통 중인 계란·닭고기·오리고기에서 위해사고 발생 시, 소·돼지*와 달리 이력정보가 없어 추적·회수가 어려움

* 이력추적제 대상 : 국산 소('08) → 수입 쇠고기('10) → 국산 돼지('14) → 수입 돼지고기('18)

※ 계란 이력추적제 해외사례 : (호주) 주 단위에서 계란 이력제 자율 시행, (일본) 생산자단체에서 시행 중

- 소·돼지 이력추적제는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력번호 표시 등 지도·단속,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중

○ (개선)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소비자에게 투명한 생산·유통정보 제공을 위해 계란·닭·오리 이력추적제 도입('19)

* (생산단계 : 농가) 가금 사육·입식 현황 및 가금 이동정보를 시스템 등록

* (유통단계 : 업체)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주체별 거래정보를 시스템 등록

- 계란·닭·오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('18 : 20억원) 및 시범사업('18)

⇒ 「축산물이력법」 개정('18.12, 농식품부)

< 이력번호 표시 및 이력정보 확인(예시) >

이력번호 표시	이력정보 확인
	

5.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

① 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

현 행	서류 확인 중심의 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한계	→	개 선	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로 영상 확인을 통한 점검 강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검역본부·지자체의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이 서류 확인 중심으로 실시되어, 방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
 - * (검역본부) AI 발생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분기 1회 점검 (지자체) 지자체 지정 방역 취약농장은 월 2회, 일반농장은 연 2회 점검
- (개선) 방역 및 위생·안전 실태 점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출입구와 축사 내 CCTV 설치를 의무화(축산업 허가요건)
 - '18년 예산에 반영되어 가금농장 CCTV 설치 지원(2,570호, 186억원)
 - ⇒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('18.6, 농식품부)

②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

현 행	가금농장은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움	→	개 선	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사육정보 실시간 현행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소·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가금농장은 사육현황 변동이 잦아,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방역조치 미흡 사례 발생
 - *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에는 분기(또는 반기)별로 농장 정보 현행화
- (개선) 방역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입식 사전신고제(농가 → 지자체) 도입 및 사육정보 실시간 현행화
 - * 검역본부·지자체에서 농장 방역실태 점검 시 입식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,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
 - ⇒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개정('18.12, 농식품부)

3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재편

현 행	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AI 발생 시 피해 확대	→	개 선	가금농장 간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 농장 이전 등 지원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고병원성 AI는 인근 전파가능성이 높아, 가금 밀집사육지역*에서 발생할 경우, 지역 전체로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
 - * 가금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
 - '14~'17년 간 AI 발생건수 중 가금밀집사육지역(15개 지역, 전체 읍·면 중 1%에 해당)에서 발생된 것이 15%
 - (개선) AI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(농장 간 500m)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장 이전 등 지원*
 - * 지자체가 사업계획 제출 → 농식품부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 선정
- ⇒ 시범사업* 추진('18 : 국비 90억원, 농식품부)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('18.9, 농식품부)
- * 보조 80%(국비 4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20%

4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상시 방역체계 운영

현 행	고병원성 AI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	→	개 선	범정부 비상방역체계 유지로 AI 발생 최소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(2.9~2.25) 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,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올림픽 흥행에 차질
 - 그간 AI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왔고, 올 겨울에도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AI 기 발생(11.17)
 - * H5N6형 고병원성 AI는 '16.11월~'17.3월까지 국내에서 343건 발생
 -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*되는 등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 상존
 - * '17.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3건 검출(제주 2, 순천 1)

- (개선)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'18년 3월까지 범정부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여 AI 발생 최소화

⇒ 위기경보를 '주의'에서 '심각' 단계로 상향하고, AI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: 농식품부 장관)를 설치(11.20)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

※ 주요 방역조치 현황

[전국]

- 전국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* 설치하여 시·군 간, 시·도 간 주요도로 거점에서 축산차량 전담 소독 실시 중

* ('17.10) 54개 시·군 66개소 → (확대) 163개 시·군·구(강원도는 전 시·군)

- 위험성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(78개 시·군) 내 가금농가에는 농가 출입자(인공수정사, 백신접종팀 등)가 1일 1농장만 방문

-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농가(1,733호)는 전담공무원(684명) 등을 지정하여 전화·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실태 지도·점검

- 가금판매업소(348개소)의 일제 휴업·소독을 월 1회에서 월 4회로 강화, 전통시장(1,538개소)에서 가금 병아리·중병아리 판매 금지

- 추가 발생에 대비, 살처분* 예비인력(17,182명) 신속한 동원 준비

* 현장 투입 전 인체감염 예방조치(교육, 예방접종, 예방약 복용 등) 철저

[강원]

-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AI 발생 차단을 위해 평창·정선·강릉의 소규모 가금농가(220호, 6,286마리) 예방적 수매·도태

- 강원도 18개 전 시·군에 거점소독시설 확대* 설치·운영

* (기존) 올림픽 개최지 인근 3개 시·군 → (확대) 강원도 18개 전 시·군

- ◇ 안전성 최우선 고려,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전·위생 대폭 강화
- ◇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,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증기관 역량 강화
- ◇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 질적 성장 견인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	• (친환경) 위생·안전 기준이 미흡한 환경 보전 중심의 인증기준	• GAP·HACCP 등의 안전·위생 기준 보강	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, '18)
	• (친환경) 축산물은 '유기'·'무항생제' 구분 * 국제인증 : '유기'만	•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'유기'로 단일화 *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	친환경농어업법 등 개정 (농식품부, '19)
	• (HACCP) 축산농장 자율적용	• 대규모 산란계 농장부터 HACCP 인증 의무적용	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(농식품부·식약처, '18)
	• (HACCP) 축산분야 항생제 중심의 평가	• 평가항목에 살충제·농약 추가	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개정 기 완료('17.10)
2.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	• (친환경) 공무원경력만으로 심사원 취업 가능	•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	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, '18)
	• (친환경) 동일 인증기관 연속 신청 허용 * 횟수 제한 없음	•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	친환경농어업법 개정 (농식품부, '18)
	• (친환경)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 여전	• 질적 성장을 위해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연속 '미흡' 부실기관 퇴출	
3.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	• (친환경)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농가와 상습 위반자 제재수단 미흡	•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·징수	친환경농어업법 개정 (농식품부, '18)
	• (친환경) 인증단체 생산관리자만 의무교육	• 모든 인증농가 대상 의무교육	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농식품부, '18)
	• (축산농장 HACCP) 사전공지 후 조사	•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제도 도입	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개정(식약처, '18)
	• (양식장 HACCP) 유해 물질 위반시 제재조치 미흡	•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	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(해수부, '18)

1.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

1] 친환경인증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

현 행	위생·안전 기준이 미흡한 환경보전 중심의 인증기준	→	개 선	GAP·HACCP 등의 안전·위생 기준 보강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소비자는 '친환경 인증'이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체 안전성도 확보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고품질로 기대하나,

* 친환경식품 구매 이유 : 안전한 농식품이라고 생각(69.3%, '16. 인지도조사)

- 위생·안전분야 심사기준이 미흡하고, 갱신심사 과정에서의 잔류물질 검사도 소극적으로 실시(농약 사용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검사)

○ (개선) 친환경 인증이 식품안전을 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위생·안전 관리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안전성 의무검사 확대 실시

* (현행) 품질관리 중심 → (개선) 품질관리 + 위생·안전(GAP·HACCP) 추가

- (위생·안전) GAP(농산물), HACCP(축산물)의 위생·안전관리 기준을 친환경 현실에 맞게 적용*하여 심사기준 보완·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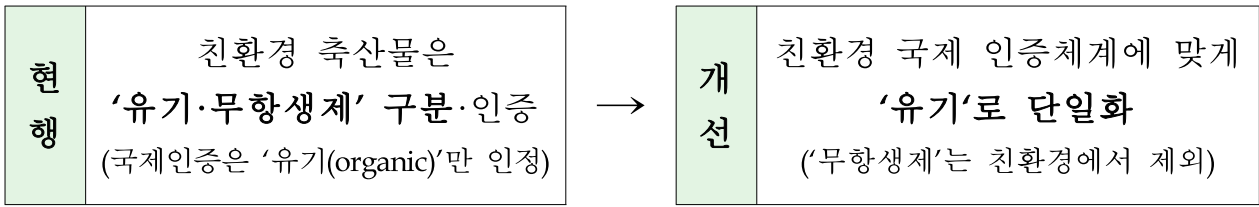
* 농장주변 청결, 수확 전후 개인·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설정 등

- (잔류검사) 신규인증 신청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잔류물질 검사를 갱신 주기별(매년) 의무적으로 실시

* (현행) 단체(표본), 개인(신규) → (개선) 단체(표본), 개인(신규, 갱신)

⇒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('18, 농식품부)

② 친환경인증을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개편



- (현황) 항생제 사용절감 등을 위해 도입한 ‘무항생제’ 인증에서 **살충제 검출로 부적합 판정***을 받은 농가 다수 발생

*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 683개소 중 부적합 농가 31개(4.5%)

- ‘무항생제*’ 인증은 **국내 특화된 제도로**, 환경·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

* 무항생제 : 항생제, 합성항균제,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 급여 등의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

- (개선)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를 국제 인증체계에 부합되도록 ‘유기* (Organic)’로 **단일화**(‘20)

* 유기축산물 : ‘01년부터 시행, 자유방목·동물복지 보장,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(질병 발생 시 항생제 등 예외적 허용) 100% 유기사료 급여 등

- ‘무항생제’는 **친환경 인증제도에서 제외***

*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

- ‘무항생제’ 계란의 경우 신규 인증 농가는 사육밀도 조건(0.05 → 0.075m²/마리) 충족 시만 허용(‘18년 하반기 예정, 축산법 시행령 개정 후)

⇒ 친환경농어업법 및 축산법 개정(‘19, 농식품부)

③ 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화 및 유해물질 평가 강화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축산농장 HACCP 인증 자율적용 ◦ 항생제 중심의 평가 	→	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대규모 산란계 농장, 종축장부터 HACCP 인증 의무화 ▷ 평가항목에 살충제·농약 추가
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	---

○ (현황) 축산농장 HACCP 의무적용* 등 안전성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도 불구하고,

* 의무적용 찬성률 : 76.2%(축산농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, 농경연, '14.12)

- 축산농장에 HACCP 적용을 농가 자율*에 맡기고 있어 참여율 저조(전업농 대비 38% 수준),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상대적 취약

* 돼지('06) → 소('07) → 닭('08) → 오리('09) → 메추리('11) → 산양('12)

* 축산농장을 제외한 도축·집유장, 식육·알 가공업 등은 HACCP 의무적용

- 축산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어, 인증기관·농가 모두 위해요소 관리에 소홀

* HACCP 인증농가 855개소 중 부적합 농가 29개(3.4%)

○ (개선) 축산농장에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위해요소 평가 확대

-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종*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**에 HACCP 의무적용(소규모는 자율적용)

*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제외한 기타 축종은 축종별 특성, 경제성 평가 등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('20~)

** 산란계 HACCP 의무적용(안) (두수/유통물량) : ('19) 20만수 이상/ 34% → ('20) 10만수 / 54% → ('21) 5만수 / 78% → ('22) 3만수(88%)

-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(살충제 등) 및 농약(제초제 등) 추가 확대(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개정 완료, '17.10)

⇒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('18, 농식품부·식약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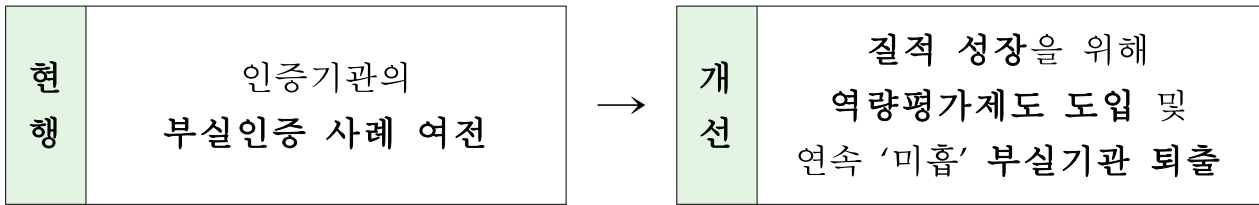
2.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

①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무원 경력만으로 심사원 취업 가능 ◦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허용(횟수 제한 없음) 	→	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퇴직자 재취업 제한 ▷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
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	---

- (현황) 부실인증 원인으로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, 인증기관의 '동일농가 연속인증 허용'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
 - 민간 인증기관에 감독기관 퇴직자 상당수가 근무하면서 상호 유착 가능성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
 - * 인증심사원(608명) 중 80명(13.2%)이 농관원 퇴직자 출신('16.12월 기준)
 - 인증기관이 동일농가에 대해 연속인증 심사 과정에서 상호 이해 관계가 얽혀 부정·허위 인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구심 거론
 - (개선) 감독기관·인증기관·농가 간의 부실인증 가능성 사전 차단
 - (심사원 자격 제한)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*
 - * (현행) 인증경력 5년 이상인 자, 자격증 소지자 → (개선) 자격증 소지자
 - (공직자 재취업 제한)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(2년간) 권고·적용
 - (인증기관 선정 제한) 농가에서 동일기관에 연속 신청은 2회로 제한
- ⇒ 친환경농어업법 개정('18, 농식품부)

②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



○ **(현황)**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및 부실인증 가능성 지속 제기

- 중대위반 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퇴출 근거*는 있으나 인증기관별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근거는 부재

*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한 경우(농약사용 묵인 등) : 즉시 지정취소

○ **(개선)**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퇴출 규정(16.8~)을 엄격히 적용*하면서,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집중관리 및 퇴출제 신규 도입

* 친환경 인증기관 일제점검(농관원, 9.18~10.17) : 62개 인증기관 중 5개 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(예정)

- (역량평가) 평가 세부지침*에 따라 매년 상반기 감독기관(농관원)이 평가기관(제3자 기관)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 확보

* 점검실적 등 24개 평가항목에 대해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(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) 결정

- (집중관리) 역량평가 '미흡'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(농관원)이 집중 지도·점검(15% 수준)

- (지정취소) 3회 연속 '미흡'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'지정취소'

⇒ 친환경농어업법 개정('18, 농식품부)

3.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
①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

현 행	→	개 선
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농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수단 미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 ◦ 징벌적 과징금 부과·징수

- **(현황)** 국민적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**징벌적 차원의 강력한 처벌**을 요구하고 있으나,
 - * 무항생제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나, 농가에 대해서는 고작 ‘시정명령’ 뿐 (○○신문, '17.8.18)
 - 친환경 축산의 경우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외에는 **제재수단 미흡**
 - **(개선)** 즉시 ‘**인증취소**’ 및 **상습 위반자(인증취소 처분 3회) 대상의 영구퇴출제** 신규 도입 등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
 - (즉시 인증취소) 축사에 농약(성분 함유 자재 포함)을 사용한 경우, 축산 물에서 농약 등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**즉시 인증취소**
 - * (현행) 시정명령 → (개선) 즉시 인증취소
 - (징벌적 과징)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**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** 신설
 - (삼진아웃) 인증취소 처분 **3회** 받은 경우 **영구퇴출**, 정부의 친환경 관련 **정책자금**(자재 지원 등) 지원 대상에서도 **참여를 제한**(3년간)
- ⇒ 친환경농어업법 개정('18, 농식품부)

② 친환경 인증농가 교육 확대 및 안전성 검사 강화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체인증 대표(생산관리자)만 의무교육(4시간 이상) ◦ 안전성 검사(연1회, 13.7천건) 	→	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모든 인증농가 대상 의무교육 ▷ 안전성 검사(연2회, 27천건)
----------------	---	---	----------------	--

○ (현황) 정부 주관의 의무교육은 단체인증 생산관리자에 국한되고,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횟수도 적어 농약 사용 등에 대한 위기의식 약화

- 개별 농가 대상의 교육은 단체 생산관리자 및 인증기관 자체교육에 의존

* 단체인증 회원 : 생산관리자 전달교육 / 개인인증 농가 : 인증기관별 자체교육

- 농가 자체관리 및 책임성 저하로 인증 위반사례 지속 발생

* 인증농가 행정처분 : ('16) 2,827건, ('15) 3,232건, ('14) 6,437건, ('13) 5,758건

○ (개선) 모든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,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기존 2배로 확대

- (교육)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(신규), 인증을 받은 자(보수) 모두 인증 제도 교육 의무화

* (현행)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 및 인증기관별 자체교육(연 1회 이상) → (개선) 전체 인증농가 대상 집합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포함)

* (신규교육) 농관원 주관, (보수교육) 농관원·농진청 및 전문기관 활용

- (농가 검사)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, 취약시기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(연 1회 → 2회, 12천 → 24천 건)

* 생육(사육) 기간 등 품목별 특성 고려, 검사 횟수는 탄력적으로 적용

- (유통 검사) 시장 유통 중인 인증품 수거 검사 확대(1,700건 → 3,000건)

⇒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('18, 농식품부)

③ 축산농장 HACCP 사후관리 강화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축산농장 사전공지 후 조사 ◦ 안전성 위반 농장 인증취소 규정 부재 	→	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제도 도입 ▷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
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	--

- (현황) 사전공지 후 조사로 인해 유해물질 사용증거 은닉, 서류조작 등 현장조사 목적달성 한계 및 안전성 위반농장 즉시 퇴출근거 부재
- (개선) 연중 무작위 불시 조사·평가*,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해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

* 축종·지역 등 여건 감안, 전체 대상 농장의 5% 수준

⇒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,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(고시) 개정('18, 농식품부·식약처)

④ 수산물 인증제 관리·감독 강화

현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HACCP) 유해물질 위반시 제재조치 미흡 ◦ (친환경) 교육 프로그램 부재 	→	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▷ 생산책임자 대상 의무교육
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	--

- (현황) 양식장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점검 부족, 유해물질 위반 시 행정처분 미약 및 친환경 인증어가 체계적 교육 미 실시

* 양식장 HACCP : 140개소 / 친환경 : 61개소(유기 16, 유기가공 39, 무항생제 6)

- (개선) 유해물질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및 HACCP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연 2회로 확대, 생산책임자 의무교육* 등 추진

*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합교육(신규+보수) 실시, 미이수시 인증표시 제한

⇒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, 생산·출하전 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(고시)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('18, 해수부)

- ◇ 농약 등 거래기록 의무화, 수산물의 사전 예방적 양식시스템 전환, 도매시장 위생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생산·출하단계 식품안전 담보
- ◇ 이력추적제 확대,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의무화,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도 등을 통한 유통·소비단계 소비자 안심 확보
- ◇ 취약계층 등의 위생·영양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유해물질 기준강화 등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	•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부재	•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 도입(일률기준 적용)	식품등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(식약처, '18.2)
	• 소면적 재배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	• 현장에 필요한 농약 신속등록 및 기준설정	연구사업 예산 확보(농진청, 127억원)
	• 패류생산 일반 해역 오염원 관리 부족	•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(36개소)	'19년 예산 확보(해수부·환경부, '18)
	• 양식수산물에 소독약, 항생제 등 사용	• 양식수 정화 등을 통한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	양식수 정화 시스템 보급 등(해수부, '18~'22)
	•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부재	•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 구축·운영	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(식약처, '18)
2. 농약 등 관리 및 지도·점검 강화	• 농약 등 판매현황 관리 미흡	• 모든 농약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	농약관리법 개정(농식품부, '18.12)
	• 양식업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행정처분 경미	•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	수산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(해수부, '18)
	•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족	• 지자체 인력·장비 확충(6개)을 통해 검사율 확대	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구축(해수부, '18)
3.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	• 위공판장, 도매시장 시설 노후 및 위생관리 미흡	• 시설 현대화, 위생관리기준 마련·적용	계획 수립 및 기준 마련(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, '18)
	•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(16개)	•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(32개)	'19~'20년 설치 예산 확보(식약처)
4.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	• 이력추적 의무화 대상 식품의 비율 낮음	• 당뇨환자, 임산부 등 섭취 식품을 대상에 추가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(식약처, '18)
	•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불가	• 종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	시범사업('18) 본격운영(식약처, '19)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5. 어린이기호·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	•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	• 캔디류, 초콜릿 등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	HACCP 의무적용 완료 (식약처, '20.12)
	• 통관단계 위해식품 차단제도 근거 부재	• 위해수입식품 보류조치 제도 (무검사역류제) 도입	수입식품특별법 개정 (식약처, '18)
	•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지속 발생	• 다빈도 이상사례 주의표시 의무화	건강기능식품법 개정 (식약처, '18)
6.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	• 해외직구 식품 증가 및 불만사례 지속 발생	• 소비자 요구 제품위주로 검사체계 전환	검사항목 선정 및 결과 제공 (식약처, '17.12)
	•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미비	•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	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(법무부, '18)
7. 급식 등 위생 개선	•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 관리 문제 지속 발생	• 식재료 검수시스템 마련	계획수립('18), 도입추진(교육부, '19)
	•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	•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강화	영업자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(식약처, '17.10~)
	•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속 발생	•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	유전자 분석장비 도입 (식약처, '18~)
8. 취약계층 영양·안전 강화	• 취약계층 급식안전·영양관리 지원 부족	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편을 통한 지원 확대	공공급식의 위생·영양지원 법률 제정(식약처, '17.12.발의)
	•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 미흡	•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접근성 제고	프로그램 전국 확대·보급 (복지부, '18)
	• 가정간편식 중 일부 영양표시(김밥 햄버거 등)	•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확대 - 모든 즉석섭취·조리식품	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법령 개정(식약처, '18.1)
	•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	•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기반(바우처) 마련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(농식품부, '18)
9. 국민 식생활·영양 관리 지원	•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제공 시범사업	•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확대	프로그램 과일간식 공급 체계 마련 (농식품부·복지부, '18)
	• 나트륨·당류 저감 실천 노력 부족	• 나트륨·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	나트륨·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운영(식약처, '18)
	• 일부 지자체에서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운영	•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 확산	지역 및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(농식품부, '18)

1.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

①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강화

현 행	국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잔류허용기준 부재	→	개 선	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(PLS) 도입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*은 잔류허용기준이 없고,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

* 전 세계 등록된 농약은 600여종이고, 이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463종이며,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이 140여종

- 수입 농산물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사례* 발생

* 자몽 및 오렌지 중 미등록 농약인 메티다티온 검출('17.8) 등

○ (개선)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**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(PLS: Positive List System)**를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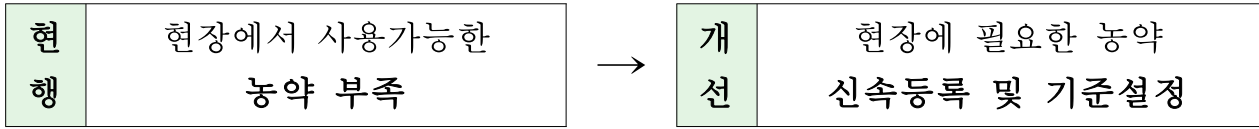
-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(140여종)에 대해서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(0.01ppm)으로 엄격하게 관리

* 외국 사례 : '06년 일본이 도입한 이후 EU·호주·대만 등에서도 적용 중

-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·아몬드 등 견과종실류 및 바나나·망고 등 열대과일류는 우선 시행중('16.12)

⇒ 「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('18.2, 식약처)

2 농약 사용실태 조사 및 위해평가 실시



- (현황) 소(小)면적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사용가능 하도록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상황
 -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대부분은 생산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없는 이유로 발생
 - * 350여종의 농산물 중 사용가능한 농약이 등록된 농산물은 135개(38.6%)에 불과
 - (개선) 소면적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**위해 평가를 통해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농약을 등록**
 - 생산현장에 필요한 농약의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사업(R&D) 실시
 - * '18년 연구사업 예산 127억원 확보
 - 작목반 등 협조를 통해 농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실태를 파악('18~)
 - * 지자체 농업기술센터, 농업기술원과 협조(농진청)
- ⇒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농약 연구사업 및 직권 등록(농진청)

3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

현 행	패류 생산해역의 오염원 관리 부족	→	개 선	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전국 패류 생산해역(71개소) 중 지정해역(수출해역, 7개소)은 56개 항목, 일반해역은 16개 항목 조사

- * 지정해역 : 패류독소, 식중독균, 항생물질 등 56개 항목(농수산물품질관리법)
- 일반해역 : 중금속, 대장균 등 16개 항목(수산업법, 식품위생법)

○ (개선) 일반해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생관리기준 마련하여 조사항목을 확대하고, 해역주변 하수처리율도 상향

- 일반해역 오염원(생활하수, 하수처리시설 등)에 대한 조사*를 실시하고, 패류 채취제한 기준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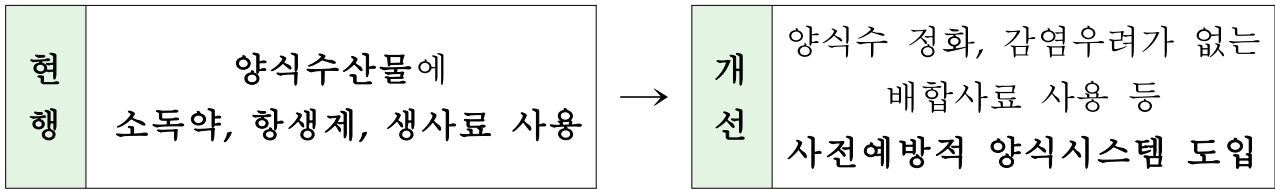
* '18년 일반해역 22개소 육·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(2.2억원 확보)

-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36개소(국고지원 31, 지자체 5)를 확충(하수처리율 제고 54% → 71%, '22)

*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 하수처리시설 운영(36개 하수처리시설 추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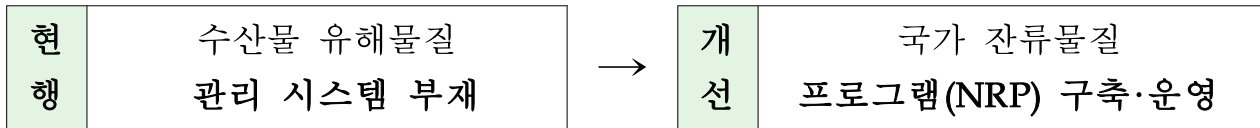
⇒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개정('18, 해수부), 일반해역 위생관리기준 마련('19, 해수부 주관, 식약처 협조), 하수처리시설 확충('18~'22, 해수부·환경부)

4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



- (현황) 질병치료 및 양식장의 오염된 양식수를 정화하기 위해 소독약, 항생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, 양식생물의 폐사율이 저감되지 않는 상황
 - 양식 수산물의 빠른 성장을 위하여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, 병원균 감염 및 바다의 오염 유발
 - * 병원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어린 물고기를 생사료의 주원료로 사용
 - (개선)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, 감염 우려가 없는 배합사료 사용,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 등으로 항생제, 소독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
 - 양식수 정화·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급, 확대
 - * 양식장 15개소에 대해 양식수 정화시설 지원('18, 90억원)
 -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고 생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제정 (양식산업발전법, '18)
 - 질병에 강한 종자 생산·보급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('13~'21)
- ⇒ 배합사료 활성화를 위한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('18, 해수부), 품종별 예방양식시스템 도입('18~'22, 134억원, 해수부)

5 수산물 유해물질 국가관리시스템 구축



○ (현황) 농·축산물에 대해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*이 구축·운영중이지만,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구축

* 생산단계에서 농약, 중금속이나 가축사육 과정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등이 식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

* 농산물 : '10 도입, 축산물(식육) : '91년 도입

-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에 있어 양식 수산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

* (양식/총생산량, 만톤) : ('11) 148/326(45.4%) → ('16) 184/326(56.0%)

○ (개선)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(NRP) 구축·운영으로 국민 건강 위해요인 차단

-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('18.1), 출하·유통되는 수산물 중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('18.2~11)

* (외국사례) 노르웨이, 일본, 미국 등의 경우 수산물의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산용 항생제 사용량 감소

⇒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개정 및 「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처리요령」 개정('18, 식약처 주관, 해수부 협조)

2. 농약 등 관리 및 지도·점검 강화

① 농약·동물용의약품 판매 기록 강화

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부 농약만 판매기록 의무 ○ 농가의 안전사용 인식 부족 	→	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▷ 농가대상 교육·홍보 강화
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	---

○ **(현황)** 농약·동물용의약품(외품)에 대한 판매기록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추적관리가 곤란하고, 안전사용 유도가 어려움

* 농약 : 현재 일부 농약(고독성 또는 보통 독성 중 9종) 농약 기록관리 의무

** 동물용의약품 : 일부 동물용의약품(호르몬제제, 항생제제, 생물학적 제제, 마취제, 처방대상 동물약품)만 거래기록 의무

○ **(개선)** 미허가·미등록 농약·동물용의약품을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판매기록 관리대상을 확대

구분	현행	개선
농약	일부 농약(고독성 또는 보통 독성 중 9종)에만 기록관리 의무	가정 원예용 등을 제외한 모든 농약 기록관리 의무
동물용 의약품(외품)	(의약품) 호르몬제제, 항생제제 등 거래기록 의무	(의약품) 구충제 추가
	(외품) 거래기록 의무없음	(외품) 살충제, 살균제, 소독제 의무 부과

-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생산자, 농약 판매상, 유통상인 등에 대한 전국단위 교육·홍보 실시('18~, 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)

* 농축수산물 생산자 위생관리 교육훈련 효율화 연구('17.8~12, 식약처)

⇒ 「농약관리법」 및 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 개정('18.12, 농식품부)

2 관리기준 위반 양식업자 처벌 강화

현 행	양식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행정처분 경미	→	개 선	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일부 양식장에서의 포르말린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초래

* 해경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어가 적발('07, '08, '12, '16)

- 해면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나, 1차 위반시 경고에 그쳐 실효성 부족
- 육상 양식장의 경우 행정처분 규정 없음

○ (개선)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

- 해면양식장 : 1차 위반 (현행) 경고 → (개정) 출하정지 30일
- 육상양식장 : 1차 위반 (현행) 없음 → (개정) 출하정지 30일

⇒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」 개정('18, 해수부)

3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

현 행	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족	→	개 선	인력·분석장비 등 확충을 통해 검사율 확대
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인력·장비 부족으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율이 전체 양식장(1만8천여개소)의 11% 수준

* 현재 수산물 안전성 검사분석 장비는 수산과학원, 수산물품질관리원 외 4개의 지자체(경남, 전남, 부산, 경북)에서만 구비된 실정

○ (개선) 인력·분석장비 확충*으로 안전성 검사율을 '19년까지 20% 이상으로 제고하고,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

*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충북·강원 등의 내수면 지역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신설 등 추진 / 지자체장비확충(개소) : ('17) 4 → ('18) 10 → ('20) 11

- 조사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구축 및 「통합식품안전정보망」에 안전성 조사결과* 입력으로 사후관리 강화

* 부적합 수산물 처리 일자·방법·결과 등

⇒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신설 협의('18, 해수부), 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지원('18, 60억원, 해수부), 통합식품안전정보망(수산분야) 입력 정보 및 항목 확대('18, 해수부)

3.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

① 위·공판장,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

현 행	위·공판장, 도매시장 시설노후 및 위생관리 미흡	→	개 선	▷ 시설 현대화 사업 확충 ▷ 위생관리기준 마련·적용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농수산물이 출하되는 위·공판장, 도매시장의 안전관리 미흡
 - 농산물 공판장은 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, 수산물 위판장은 189개소 중 57개소(30%)가 20년 이상 노후화
 - 위판장은 낙후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'위생관리 권고지침'을 운영('11~) 중이고, 도매시장·공판장은 위생관리기준이 없음
 - (개선)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부지원대상을 확대, 위·공판장, 도매시장 위생관리기준 마련 등 사각지대 안전관리 강화
 - 공영도매시장과 수산물 위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, 농산물 공판장 시설현대화 지원도 신규 추진
 - * 위판장 개보수 지원내용이 포함된 「수산물 유통관리 지원법」 개정완료('17.11), '18년 5개소 현대화 지원(39억)
 - 위·공판장, 도매시장 위생관리기준*을 마련하여 적용
 - * 보관창고 적정온도 유지, 용수관리, 작업자 위생 관리, 장비·기구 소독 등
- ⇒ 위·공판장 현대화 지원계획 수립 및 단계적 지원('18, 농식품부·해수부),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('18.6, 해수부 추진, 식약처 협의), 「도매시장·공판장 업무규정」 개정('18, 농식품부)
- * 「농수산물유통·가격안정법」에 도매시장, 공판장 관련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정하고 있음

2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농약 검사 확대

현 행	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(16개, 50%)	→	개 선	'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(32개, 100%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

- (현황) 전국 공영도매시장(농산물을 취급하는 32개소) 중 16곳에 현장
검사소가 설치되어,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사 실시
 - 농산물은 출하 후 유통 이력을 파악하기 힘들어 유통단계 검사로
회수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
 -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서 유통전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를
실시하게 되면 부적합품이 사전에 차단되므로 확대 설치 필요
 - * 공영도매시장은 전국 158만 농가에서 생산·유통되는 1,183톤의 농산물 중
722만톤(61%)이 거래되는 유통 길목
 - (개선) 농산물 유통 길목 안전관리를 위해 '20년까지 모든 공영
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(16개 추가)
 - 설치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 마련('19)
 - *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(3개), 충북(2개), 전북(3개), 전남(1개), 경남(3개)
 - ** 공영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재원 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⇒ 예산확보 추진('19~'20, 총 224억원, 식약처)

4.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

① 이력추적관리 의무품목 확대

현 행	이력추적 의무화 대상 식품의 비율이 낮음	→	개 선	당뇨환자, 임산부 등 섭취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대상에 추가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식품의 제조·가공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중

- 대상 식품을 일부 품목(영유아식, 조제유류, 건강기능식품)에 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해 위해발생시 신속한 회수 조치 등에 한계

* 전체 식품(농·축·수산물 제외) 생산량 2,907만톤 중 20만톤(0.7%)만 식품 이력 등록관리('16)

○ (개선)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비만·당뇨환자 대상식품, 임산·수유부용 식품까지 확대

* 업체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

⇒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개정('18, 식약처)

2]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

현 행	매장별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수단부재	→	개 선	종합 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위해식품 정보를 전국 식품유통매장의 계산대(단말기) 등으로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중*

* 전국 식품 유통·판매 매장 10만여개 중 86,440개소에 시스템 설치('17.11)

-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중소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증·확인하는 수단 부재

- (개선) 위해식품 정보가 매장에 정확히 제공되어 정상 차단되는지 확인하고,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종합관제(검증)시스템 구축 ('18, 2.3억)

- 매장별로 위해식품정보가 정상 수신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, 문제점(장애)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(식품안전정보원)

⇒ 종합관제시스템 개발·구축('18), 본격 운영('19, 식약처)

5. 어린이기호 ·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

1 어린이기호식품 제조·판매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

현 행	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	→	개 선	캔디류, 초콜릿 등 제조업체 HACCP 의무적용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지속적인 지도·점검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위반율*은 감소 추세이나,

* 위반율 : ('14) 0.08% → ('15) 0.05% → ('16) 0.04%

- 학교 주변 문방구나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*

* 학생, 학부모 대상 식품안전관리 설문결과(식약처, '16.9) : 학교주변에서 판매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(분식점 48.5%, 문방구 29.8%),

- (개선)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적용 의무화 및 위생취약 업소 대상 집중 관리

- 과자, 캔디류, 초콜릿류, 음료류 등 제조업체 HACCP 의무화

* 업체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단계적 적용

- 또한, 이용률이 높은 문방구, 분식점 등을 집중관리(월1회 점검) 하고,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는 '이력점검제' 실시('18~)

⇒ HACCP 의무적용 완료(~'20, 식약처)

②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

현 행	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지속	→	개 선	▷ '신고수리보류조치' 제도 도입 ▷ 위해우려 제품 중심으로 현지실사 확대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

○ (현황) 일반식품 대비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음*

* 식품안전체감도 조사(국민들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)
: ('17 상반기) 식품안전 전반 80.9% vs 수입식품 58.7%

- 통관 단계에 있는 중대한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통관 보류 등 신속조치 할 수 있는 방법 부재
- 현지 중심 안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있으나, 전체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만 현지실사*를 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

* 해외제조등록업소 60,247개소 대비 365개소 현지실사(0.61%, '16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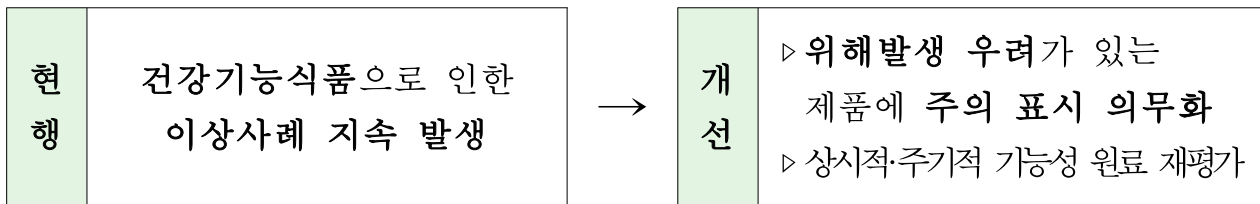
○ (개선)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'신고수리보류조치'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 실효성 제고

- 특정 국가(지역)의 식품 등이 중대한 위해우려 시 신속하게 수입 신고를 보류하는 '신고수리보류조치(무검사 역류제)' 제도 도입
- 국민이 많이 소비하거나, 비살균 제품 등 위해도가 높은 품목, 부적합 사례가 많은 국가·업소·품목 위주로 현지실사 확대

* 현지실사 확대 : ('17) 390개소 → ('20) 450개소

⇒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('18, 식약처) 및 현지실사 강화 ('18~, 식약처)

③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분석 및 기능성 원료 재평가



○ **(현황)**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, 새롭게 신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표시를 강제할 수단 부재

* 이상사례 신고건수 : ('12)58 → ('13)136 → ('14)1,733 → ('15)502 → ('16)696

○ **(개선)**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**영업자가 '섭취시 주의사항'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명령제 도입**

-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인정될 경우 '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'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

- 기능성 원료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적·주기적 재평가 지속 실시

* '17년 현재 녹차추출물(체지방 감소에 도움) 등 9종에 대한 재평가 추진 중

** 재평가 계획 : ('18) 19종, ('19) 8종, ('20) 54종, ('21) 31종 등

- 매반기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중증 이상사례 정보를 분석하고, 대응책 마련(반기)

*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제조·수입업체에 통보하고, 표시명령 대상여부 검토·결정

⇒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8 상반기, 식약처)

6.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

① 해외직구 및 인터넷 판매식품 관리 강화

현 행	정부가 품목을 선정·검사	→	개 선	수요자 중심의 검사제도로 전환 - 소비자 요청품목 위주 검사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배송 되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건수가 증가*하고 있으며, 위해성분 지속 검출

* 해외직구 식품 구매건수 : ('14) 322만 → ('15) 475만 → ('16) 578만

- 인터넷, SNS 등을 통해 유통과정 없이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유행

* 사이버쇼핑몰 식품 거래액(조원) : ('10) 2.8 → ('12) 3.8 → ('16) 4.8

- (개선) 사이버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**소비자가 요청하는 직구제품을 검사하고, 인터넷 판매식품의 수거·검사 강화**

- 구매비율이 높거나 소비자가 요청*하는 제품에 대해 위해항목을 검사하고, 그 결과를 해외직구사이트 등에 제공(때분기)

* 해외직구 품목 중에서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 공개 모집

- 구매트렌드, 실마리 정보 등 사전정보 분석을 통한 인터넷 판매 식품의 수거·검사* 대폭 강화(연중)

* 설, 추석, 어버이날, 휴가철 등 집중 조사 / ('17) 400건 → ('18) 800건

⇒ 해외직구식품 및 인터넷 판매식품 검사계획 수립('18, 식약처)

②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 신규 도입

현 행	식품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미비	→	개 선	집단 손해배상 청구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**(현황)** 식품사고 발생시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이 부담되어 소송제기를 기피,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불가

-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 증가*, 신고의 약 74%가 품질·안전과 관련된 피해로 약 38%는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신청

* 식품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(소비자원) : ('13) 329 → ('14) 423 → ('15) 1,151

- 식품 사고로 인한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,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음

○ **(개선)**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'집단 손해배상 청구제도' 도입

- 위해식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마련

* (법무부) 현행 「증권관련집단소송법」의 적용범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여 식품피해의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토록 입법예고 추진

- 고의·중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영업자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(최대 3배)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*

* 「제조물 책임법」 개정('17.4), 식품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('18.4 시행)

⇒ <집단소송제>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개정으로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('18, 법무부),

<징벌적 손해배상제> 「제조물 책임법」 시행('18.4, 공정위)

7.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

① 학교급식 위생 수준 제고

현 행	학교급식 공급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지속 발생	→	개 선	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신규 도입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위생관리 문제 및 품질기준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

*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매년 적발, 학교급식 반찬에서 고래회충 ('17.10)

- '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'에 따라 당일 식재료 구입, 전량 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매일 아침 식재료 검수

* 식재료 검수시 영양(교)사가 수량, 온도, 유통기한, 품질(이물질 혼입 여부, 신선도, 이취 등), 포장상태까지 검수

- 시간이 많이 소요(약 1시간)되고 육안 검수로는 품질·위생상태 확인에 한계

○ (개선)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,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마련

- 축산물 납품시 검수기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정보 제공과 함께 관리자 컴퓨터에 식재료 정보*가 자동적으로 기록 (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)

* 생산정보(생산지역, 친환경 여부), 위생정보(원산지, 위해 축산물 여부 등) 유통정보(부위, 유통기한, 냉장·냉동, HACCP 인증 등)

※ 가공식품, 농수산물 등의 경우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이력추적 및 시스템 구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·장기적 추진 필요

⇒ 식재료 검수시스템 계획 수립('18), 도입 추진('19, 교육부)

2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

현 행	음식점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	→	개 선	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강화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음식점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위생분야, 소비자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 시행('17.5~)

- 모범음식점 제도에 비해 평가기준이 엄격*하다는 인식과 지정에 따른 효과(매출증대 등)에 대한 의구심으로 초기단계 참여가 저조**

* 모범음식점 : 22항목 / 위생등급제 : 매우우수 97, 우수 86, 좋음 71

** 전체 61만개 일반음식점 중 2천8백여개소(0.5%) 위생등급제 신청('17.11)



○ (개선)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제고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

- 지자체, 음식점중앙회 등 협회와 협조하여 설명회를 확대하고, 현장 진단 및 기술지원 실시

- 등급지정 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* 제공

* 상·하수도료 감면,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한 위생용품 지원 등

⇒ 현장설명회 등 홍보 강화, 지자체 협조요청(식약처)

3 식중독 관리체계 강화

현 행	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문제 지속 발생	→	개 선	▷ 식중독 취약시설 집중관리 ▷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, 식중독 원인규명률은 평균 56% 수준으로 낮은 상황(최근 5년간 평균)

* 학교급식 환자수(명) : ('14) 4,135 → ('15) 1,980 → ('16) 3,039 → ('17.10) 1,830

○ (개선)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관리 및 원인규명과 추적관리에 활용 가능한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DB 확충('18년 52억)

-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·음식점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
-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·축·수산물과 생산환경(토양, 용수 등)에서 오염될 수 있는 식중독균을 조사하여 유전정보를 DB화('18)

⇒ 식중독균의 유전정보 확인을 위한 분석장비(차세대염기서열장비) 도입('18.10, 식약처)

8. 취약계층 식생활 · 영양 안전망 확충

1 어린이·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

현 행	취약계층 대상 급식의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부족	→	개 선	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편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,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부족
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체 소규모 어린이집의 57%를 지원하고 있으며, 노인복지시설 등은 지원이 없음

*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음 (영유아보육법)
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 없음(식품위생법)

○ (개선)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편·확대하여 소규모 어린이집, 노인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

-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(5만4천개소) 및 사회복지시설(약 1만개소) 지원 추진(~'20)

⇒ 공공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('17.12 국회제출, 식약처)



•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(100명 미만) 수 : 54,000여개소('16년 말 기준)
• 소규모 사회복지시설(50명 미만) 지원대상 수(추정) : 약 1만 5천개소
(노인복지시설 8,700개소, 장애인 등 기타 복지시설 6,400개소)

2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의 영양관리 지원 확대

현 행	임산부·영유아 영양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짐	→	개 선	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, 수혜자 전국 확대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·상담을 하고, 보충식품(조제분유, 쌀, 우유 등)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중
 - *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80%미만)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8만7천여명, 대기자는 1만명('16)
- 만삭 임산부, 출산초기, 직장생활 등으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 발생
 - *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교육을 받아야 보충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음
- (개선) 영양플러스 사업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,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**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**
 -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적용('17.10~'17.11)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보건소 등으로 확대

⇒ 모바일교육 전국 확대 실시 및 수혜자 확대('18, 복지부)

< 영양플러스 사업 흐름도 >



3 가정간편식 위생·영양관리 강화

현 행	일부 즉석섭취식품에 한해 영양표시	→	개 선	모든 즉석섭취·조리식품, 시리얼 등으로 영양표시 확대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일인가구, 고령화 등으로 가정간편식 식품*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

* 가정간편식은 간편한 식사 대용품으로 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 및 선편의식품류가 이에 해당

- 가정간편식 중 김밥, 햄버거, 샌드위치 등 일부 즉석섭취식품에 칼로리, 나트륨, 당 등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

* 영양표시 의무대상 : 과자·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, 특수용도식품, 음료류,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, 햄버거, 샌드위치 등

○ (개선) 가정간편식의 영양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모든 즉석 섭취·즉석조리식품, 시리얼류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

-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(1년 이상) 부여

⇒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.1, 식약처)

4]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기반 마련

현 행	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	→	개 선	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기반 마련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가 지속 중*이며, 현금부조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움

*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('15) : 48.3명(국민 전체 평균=10)

-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 시, 교육 → 보건 → 오락·문화 → 식품의 순으로 지출 증가('16, 산업연구원), 보다 직접적인 식품 섭취 지원 필요

○ (개선)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'바우처' 제도 도입 검토

* 사업 추진체계 설계를 위한 타당성연구 실시('18년, 5억원)

- 현금부조가 아닌 식품 구입액에 비례하여 지원 추진*

* (예시) 구입액의 20%를 바우처로 지급

- 특정품목 구매제한 및 식생활 교육 병행을 통한 올바른 식품 선택환경 조성 방안 검토

⇒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개정('18.12, 농식품부)

9. 국민 식생활 · 영양관리 지원

①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비만예방 및 과일간식 제공

현 행	<p>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시범사업 운영 중 * '17년 2,357명</p>	→	개 선	<p>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확대 * 약24만명</p>
--------	--	---	--------	---

- (현황) 학생 비만율은 '08년 이후 지속 증가*하고 있으며, 이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원인

* 초·중·고 학생 비만율(교육부 2017) : 11.2%('08년) → 14.7%('12년) → 16.5%('16년)

- 맞벌이,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복지부·농식품부 협조를 통해 비만예방 활동 및 과일 간식제공 시범사업을 실시

* '16년 10개교 250명, '17년 61개교 2,357명 실시

- (개선)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**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**(수혜인원: 약 24만명)

- 사업내용 :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, 미각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, 국내산 과일간식 제공*

* 과일간식 제공 72억(농식품부),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5.2억(복지부)

⇒ 과일간식 공급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추진('18, 농식품부·복지부)

2 나트륨·당류 저감화

현 행	나트륨·당류 저감 실천 노력 및 지원 부족	→	개 선	나트륨·당류 저감을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현황)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약 2배 수준이며, 어린이·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기준 초과

* WHO 나트륨 권고량 2,000mg, 첨가당 섭취 기준 : 총 열량의 10%

- 소비자들의 당류 저감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나트륨 저감 실천 노력이 부족하므로 저감화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식환경 조성 필요

* '16년 나트륨·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조사

- ▲ 나트륨 저감 실천노력 44.5% ▲ 당류 저감 불필요 : 20대 30.6%

- (개선) 나트륨·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

- 국민의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, 주요 저감 대상을 선정·집중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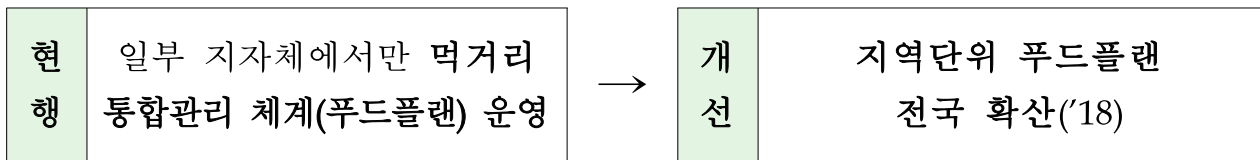
* (가공식품) 가정간편식 중심으로 기업 현장기술지원 (외식) 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운영('18~), (급식) 나트륨 저감 급식 운영 프로그램 마련·적용('18~)

-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* 및 사업정책 효과 분석

* 학교·지역사회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SNS 등을 통한 지속적 정보 노출

⇒ 당류 저감화에 따른 비용·편익 분석 실시('17~), 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등 운영('18~, 식약처)

3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먹거리 통합 관리



- (현황) 일부 지자체(2개, 서울·전주)에서 먹거리 생산·유통·소비를 통합관리하는 지역 주민 먹거리 보장 시스템(지역단위 푸드플랜*) 운영 중

*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, 지역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(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 급식·외식·직매장 등에 공급) 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

** '15년 「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('15.10)」 채택을 통해 전 세계 117개 도시(런던, 뉴욕 등)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마련에 동참

- 지역의 친환경·GAP 등 우수 농식품을 급식·외식·직매장 등 지역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

- (개선방안)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으로 확산

-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① 계획수립 연구용역, ② 지역내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, ③ 재정사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국 확산 유도(농식품부, '18년 1,150백만원)

⇒ 지역 푸드플랜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및 계획수립(~'18.2, 농식품부)

- ◇ 부처간 협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·집행될 수 있도록 **현장중심 관리체계로 전환**
- ◇ 식품사고 발생 전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·상시관리하고,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
- ◇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·기능을 정책조정 중심으로 강화하고, 민관소통 거버넌스를 통해 **국민중심 소통체계로 전환**

과제명	현행	개선방안	조치계획
1.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	• 부처간-지자체간 상호 이해 및 협업노력 부족	• 협의·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	협업채널구축운영 계획 수립 (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'18.3)
	•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 및 개별적 현장점검	• 생산정보 공유 확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	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(국조실 '18.4)
	• 지자체 축산물 안전 검사 인력·장비 부족	• 검사시설 확대 및 부처 전문인력 지원	지자체 역량강화 지원계획 마련 (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'18.3)
2.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	• 매뉴얼이 복잡 다기, 위기시 적기대응 곤란	• 위기시 적용 가능한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	표준매뉴얼 마련 (국조실, '18.6)
	• 위기시 소관부처별 개별 대응	•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	총리실 상황팀, 부처별 전담팀 설치 (국조실, '18.1)
3. 식품안전 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	•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기본·시행계획 심의 위주로 운영	• 정책 조정·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	식안위 역할 강화 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 (국조실, '18.1)
	• 정부 중심의 일방향 소통	• 민관 소통 거버넌스 운영	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(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'18.6)

1.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

① 부처간-지자체간 협업 활성화

현 행	부처간-지자체간 상호이해 및 협업노력 부족	→	개 선	협업·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부처간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가 부족하고, 각 부처는 지자체 담당부서와 종적으로만 연결*되어 있어 협업·소통채널이 제한

* 농식품부-지자체 축산직-동물위생시험소, 해수부-지자체 수산직-수산물검사기관, 식약처-지자체 위생직-보건환경연구원

** 살충제 계란사건시 현장을 고려치 않은 검사항목 확대(27→33종)로 현장 적용이 어려움,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준 설정

- 농장(생산)과 수집판매업(유통)을 겸하는 농가(전체 식용란 중 42.4%)에 대해 관리 주체별로 수거·조사, 농가 부담과 업무 중복 발생

○ (개선) 부처간-지자체간 협업·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

-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, 현장에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 및 항목 설정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 개정

- 부처별로 지자체와 구축된 업무채널을 횡적으로도 연계하는 협업 채널을 구축(가칭 식품안전실무협의회)하여 일관된 농어가 안전관리 체계* 운영

* 예시1)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계획 수립시,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함께 선정, 생산-유통단계에서 집중 조사함으로써 식품안전성 제고

예시2) 부적합 품목 발생시, 사전협의를 통해 수거·검사 기관별 조사 대상을 설정하여 업무중복을 막고 농가 부담도 경감

⇒ 부처간-지자체간 협업채널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('18.3, 농·해·식), 「축산물위생관리법령」 개정('18)

2 정보공유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

현 행	부처간 정보공유 부족 및 개별적 현장점검	→	개 선	생산정보 공유 확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**(현황)** 생산단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부적합제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* 문제 원인 파악과 해결에 장시간 소요

* 부적합식품에 대해 부처별로 개별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으며, 처리과정도 최초 확인부터 조치까지 정보망에서 미연계

- 생산-유통 단계별로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어 위해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미흡

○ **(개선)**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추적·조사를 위해 가축매몰지 정보, 사료품목과 성분 등까지 **생산단계 정보를 확대하여 실시간 공유**

- 위해식품 등 문제제품은 적발·수거·폐기까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**부적합식품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정보망도 연계**

- 위해정보 입수 또는 위해사고 발생 시, 농식품부·식약처는 사전 정보공유 및 협의를 거쳐 **생산·유통단계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('18)**

* 현재 축산물은 생산/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 개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중요 사안의 경우 농식품부·식약처가 공동조사 실시

⇒ 생산단계 정보제공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(18.7, 농·해·식), 부적합식품 표준코드 적용 및 연계체계 구축(18.1~, 농·해·식),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반영('18.4, 국조실), 「축산물위생관리법령」 개정('18, 농식품부·식약처)

3 지자체 검사 역량 보강

현 행	지자체 축산물 안전검사 인력·장비 부족	→	개 선	검사시설 확대 및 부처 전문인력 지원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지자체 검사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·장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검사항목이 확대·시행

- 새로운 검사법 도입 및 검사항목 등 확대시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이 부족
- 닭과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안전성 검사를 동물 위생시험소(전국 18개소)에서 전담

○ (개선) 지자체 축산물 검사 시설 확충* 및 전문인력 지원

* '18년도 축산물 안전검사장비 예산 47억 증액

- 검사항목 등 확대시 사전교육·설명 의무화(식약처, 2회 이상), 필요시 부처 검사인력(지방식약청, 농관원 등)을 파견·지원
-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담하던 축산물 안전성 검사 중 유통단계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(전국 16개소)에서 분담 수행

⇒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계획 마련('18.3, 농·해·식),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('18.9, 식약처)

2.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①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

현 행	매뉴얼이 복잡 다기하여 위기발생시 적기대응 곤란	→	개 선	위기사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현황) 부처별 위기대응 매뉴얼이 복잡·다기하고, 위기수준에 대한 판단도 달라 사건·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곤란

○ (개선) 위기사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

- 위해도와 확산도를 고려해 현행 4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로 나누어진 위기수준을 '위기냐 아니냐'로 양분,* 초동단계에서 신속 대응

* (미국 FDA) 상황관리-위기대응-사후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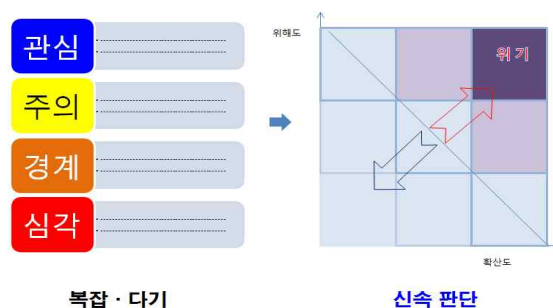
- 부처별, 단계별로 나누어진 의사결정구조를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일원화하여 대응수준 결정

- 위기 상황별·주체별 행동요령과 대국민 소통메시지를 사전에 마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시행착오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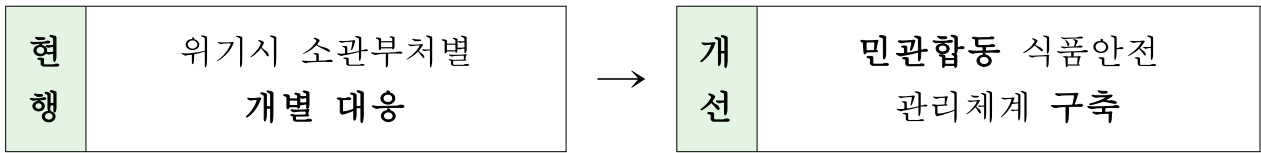
- 위기발생시 핵심 관계자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업무별 담당자, 분야별 전문가, 소비자 단체 연락처를 포함

- 담당자 교육, 시나리오별 도상 훈련(수시)을 실시, 이행가능성 제고

⇒ 식품안전 표준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(18.6, 국조실) 및 부처 매뉴얼 정비(18.9)



2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



- **(현황)**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 방식이 상이한 상황에서 개별 대처로 인해 정부의 일관된 대책 마련·발표에 어려움
- **(개선)** 식품안전상황팀*(신설,국조실)-전담팀(부처별)-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간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, **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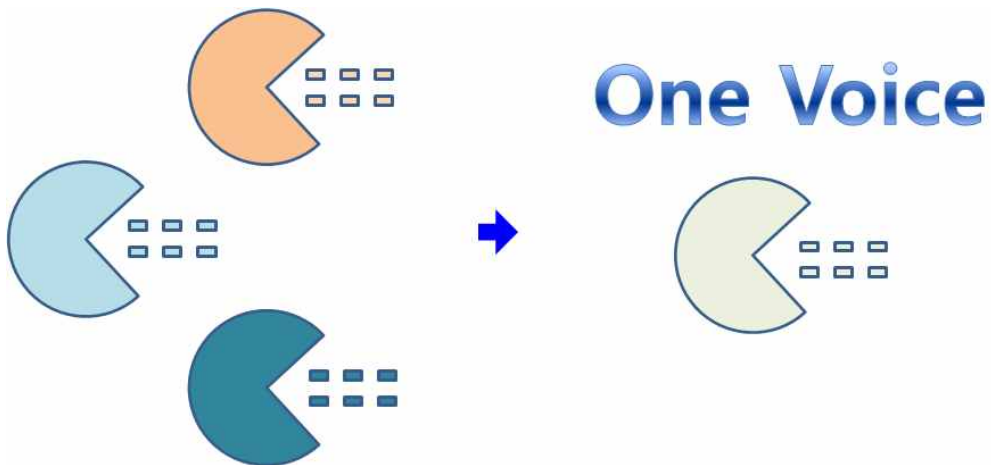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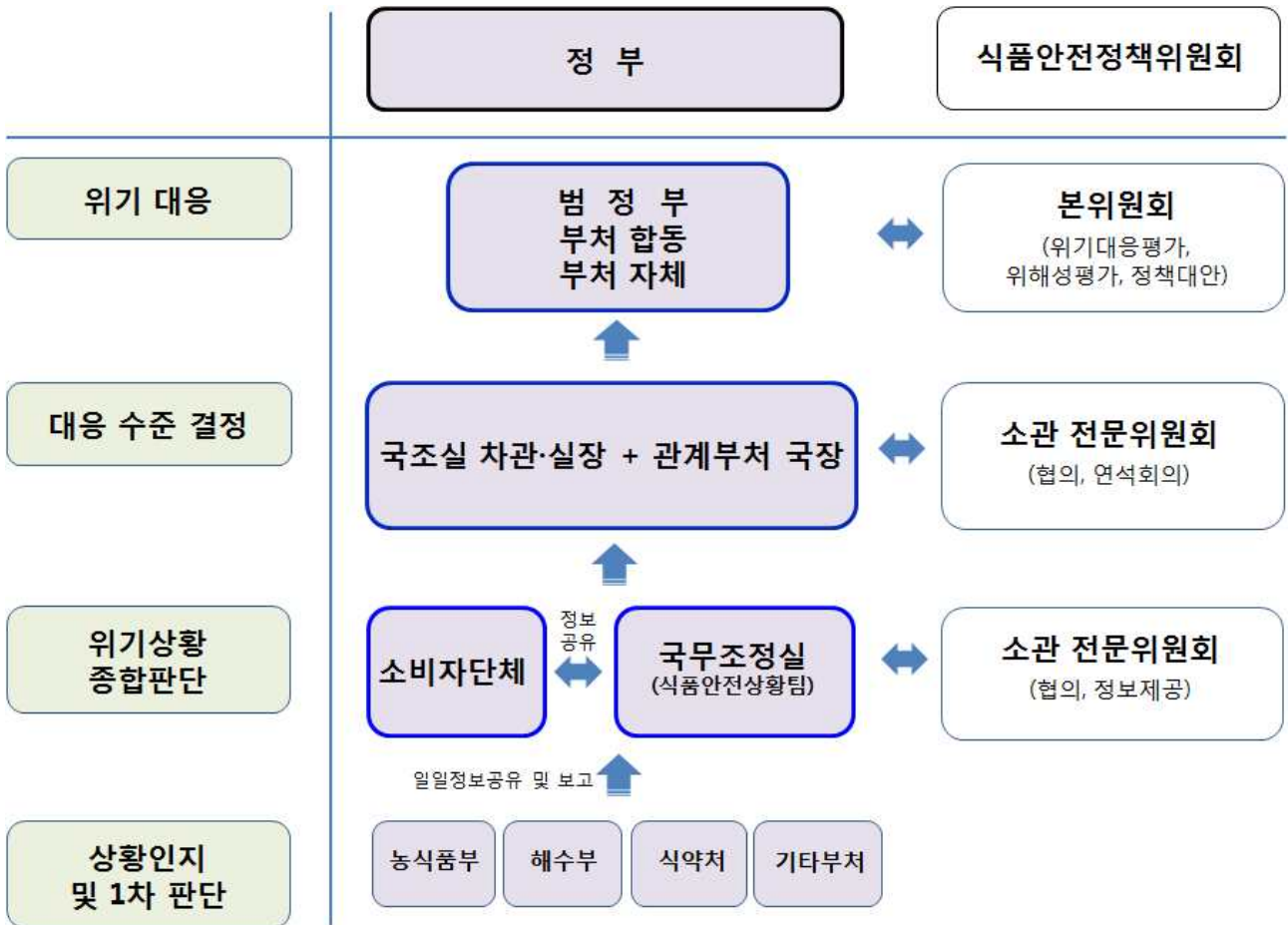
* (구성) 1팀 5명, 국조실, 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, 전문가

* (식품안전 위기대응 역할) ▲부처 일일상황정보 취합·분석 ▲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모니터링 ▲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인건상정 및 협의 ▲ 대책 후속조치 관리 등

- 각 부처 전담팀은 소관 업무별 국내·외 위해정보를 수집,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판단 후 국조실 상황팀에 일일보고
 - 국조실 상황팀은 부처 정보 취합·분석,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기징후 감지 및 판단
 -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(국조실 차장 또는 사회실장 주재)에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협의, 단독·부처합동 등 대응수준 결정
 - 부처 합동 대응시 장·차관급 회의(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)에서는 부처별 역할, 언론대응 창구, 대국민 메시지 등 결정
- ⇒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상황팀, 부처별 전담팀 설치('18.1, 국조실, 농·해·식)

참 고

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· 운영[안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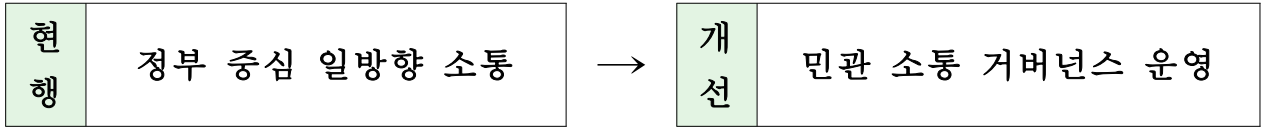
3.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1]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책 조정·심의 역할 강화

현 행	식품안전 기본·시행계획 위주 심의	→	개 선	정책 조정·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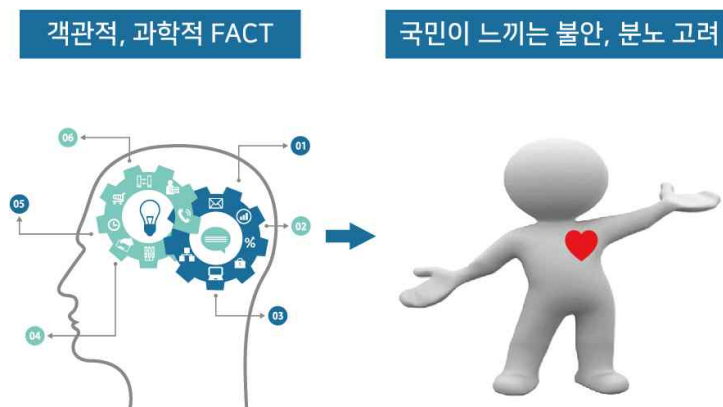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(연 1~2회) 위주로 운영, 정책 조정 역할 및 전문성 활용 부족
 - 본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·미생물 등 위해 요소 중심으로 구성, 문제 되는 해당품목(예:계란)을 다루는데 한계
 - (개선)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
 - 국민건강에 영향이 크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정책 중심으로 시행 전 필요한 안전*을 상정하여 조정
 - * 안전성 검사 계획 및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, 새로운 기준규격 설정 시 사전 검토 등
 - 전문위 구성을 위해요소 중심에서 식품분야별로 재편*, 부처별 식품안전대책은 소관 전문위와 협의토록 하여 정책완결성 제고
 - * (현행) 화학물질/미생물/신식품 등 → (재편) 농/축/수산물/가공·수입식품/소비·영양안전
 - 분야별 전문위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위해정보, 위기상황 판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식품안전상황팀(국조실)과 공유·대응
 - 민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*를 신설, 위원회 운영방향, 활용 계획 검토, 추진사항 점검 및 여러 전문위의 관련 사항 논의
 - * 전문위(분과별 위원장, 간사) + 관계부처(국장급) + 소비자단체 등 참여(분기 1회)
- ⇒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('18.1, 국조실)

②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



- (현황)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정부 대책이 과학적 안전성 위주의 사실 전달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는 수준에는 미흡
- (개선) 전문성과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책수립 및 발표과정에 **관련분야·소통 전문가, 소비자 단체 등 참여**
 -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해식품의 **발생원인과 위해수준에 대한 조사·평가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발표**
 - 객관적 위해도와 국민의 주관적 인식수준(분노·불안)을 함께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

⇒ 부처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('18.6, 농·해·식)



- 「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」 신속 시행(관련부처)
 - 고시·행정규칙 등 개별부처에서 실시 가능한 행정조치는 즉시 시행
 - 규제심사 필요 과제는 최우선순위로 심사(국조실)
 - 예산·인력 등 필요 대책은 '19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(기재부·행안부)
 -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, 소관부처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

- 「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」 분기별 점검·평가(국무조정실)
 -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신설될 식품안전 상황팀(국조실)에서 과제별 조치계획에 따른 소관부처 이행상황 점검
 - '18년 상반기 발표할 제4차('18~'20년)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식품안전정책위 상정)에 종합대책 내용 반영